

# 2018년도

## (주)LG상사 기업지배구조 보고서

### (주)LG상사

당사는 유가증권시장 공시규정 제24조의2에 따라 지배구조 관련 현황에 관한 투자자의 이해를 돕기 위하여 동 보고서를 작성하였습니다. 동 보고서 내 지배구조 관련 현황은 2018년 12월 31일을 기준으로 작성되었으며, 보고서 제출일 현재 변동사항이 있는 경우 별도 기재하였습니다. 보고서 내 지배구조 관련 활동내역의 경우 공시대상기간(2018년 1월 1일~2018년 12월 31일)의 내용을 기재하였고, 가이드라인에서 별도 기간을 제시한 경우 해당 기간에 대한 내역을 기재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 [목차]

I. 개요-----	[3]
II. 기업지배구조 현황-----	[4]
1. 기업지배구조 정책-----	[4]
2. 주주-----	[5]
(핵심원칙 1) 주주의 권리-----	[5]
(핵심원칙 2) 주주의 공평한 대우-----	[9]
3. 이사회-----	[14]
(핵심원칙 3) 이사회 기능-----	[14]
(핵심원칙 4) 이사회 구성-----	[18]
(핵심원칙 5) 사외이사의 책임-----	[26]
(핵심원칙 6) 사외이사 활동의 평가-----	[30]
(핵심원칙 7) 이사회 운영-----	[31]
(핵심원칙 8) 이사회 내 위원회-----	[35]
4. 감사기구-----	[38]
(핵심원칙 9) 내부감사기구-----	[38]
(핵심원칙 10) 외부감사인-----	[45]
5. 기타 주요 사항-----	[47]

[첨부] 기업지배구조 핵심지표 준수 현황

▶ 기업명: (주)LG상사

▶ 작성 담당자: (정) 주한 PM(Project Manager) (부) 김예리 PM(Project Manager)

▶ 작성기준일: 최근 사업연도 말일(2018.12.31)

▶ 기업개요

업종		자산규모 (연결기준)			상장시장			기업집단 소속 (공정거래법상)	
비금융	금융	5 천억미만	2 조미만	2 조이상	코스피	코스닥	비상장	해당*	비해당
○				○	○			○	

\* 기업집단명: 엘지

## 1. 기업지배구조 정책

## 가. 기업지배구조 원칙

당사는 주주의 가치가 지속적으로 창출될 수 있도록 기업의 가치를 높이기 위해 질적·양적 성장을 추구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당사는 '이사회 중심 경영' 원칙하에서 투명한 지배구조를 갖추고 있습니다.

당사의 중요한 의사결정은 이사회를 통하여 결정되고 있습니다. 당사는 이사회 개최 전 이사들에게 의안에 대한 사전 설명을 실시하여 이사들에게 충분한 자료와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이사회에서 실질적인 논의와 합리적인 의사결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당사의 이사회는 보고서 제출일 현재 총 7명의 이사(사외이사 4명, 기타비상무이사 1명, 사내이사 2명)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과반수를 사외이사로 구성함으로써 이사회의 독립성과 경영진 견제 기능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당사의 사외이사는 별도로 구성된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에서, 경제, 법률, 공정거래, 리스크 관리, 에너지·자원 산업 등 다양한 분야에서 풍부한 경험과 전문성이 검증된 분들 중에서 후보를 추천하여 주주총회에서 선임되고 있으며, 이를 통해 이사회의 전문성과 다양성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당사의 이사회에는 감사위원회와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감사위원회는 전원을 사외이사(총 3명)로 구성하고 있으며,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는 총 3명의 위원 중 과반수(2인)를 사외이사로 구성하고 있습니다.

## 나. 지배구조 현황

내부기관	구성 (사외이사수/ 구성원수)	의장(위원장) (사외이사 여부)	주요 역할
이사회	4/7	윤춘성 (사내이사)	· 법령 또는 정관에 정하여진 사항에 대한 승인 · 주주총회 상정안건 승인 · 경영·재무에 관한 사항 승인 · 이사, 이사회, 이사회 내 위원회에 관한 사항 승인 등
감사위원회	3/3	정운오 (사외이사)	· 법령 또는 정관에 정하여진 사항에 대한 승인 · 회사의 업무·회계 감사 · 외부감사인 선정 및 업무 감독 · 내부회계관리제도 감독 업무 등
사외이사후보 추천위원회	2/3	- <sup>1)</sup>	· 사외이사후보의 추천 등

1) 보고서 제출일 현재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의 위원장은 선임되지 않음.

## 2. 주 주

### (핵심원칙 1) 주주의 권리

주주는 권리행사에 필요한 충분한 정보를 시의적절하게 제공받고, 적절한 절차에 의해 자신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어야 한다.

### (세부원칙 1-①)

기업은 주주에게 주주총회의 일시, 장소 및 의안에 관한 충분한 정보를 충분한 기간 전에 제공하여야 하고, 주주총회에 주주가 최대한 참여하여 의견을 개진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 가. 주주총회 개최 내역

상법 제363조 및 제542조의4에 따라, 주주총회를 소집할 때에는 주주총회일의 2주 전에 각 주주에게 서면으로 통지를 발송하거나 각 주주의 동의를 받아 전자문서로 통지를 발송하여야 합니다.

당사는 최근 3년간 주주총회 3주전까지 주주총회 일시, 장소 및 의안 등 주주총회 관련 전반에 관한 사항을 공시하여, 주주가 안건에 대해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검토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최근 3년간 주주총회 개최 현황 및 세부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구분	제 66 기 주주총회	제 65 기 주주총회	제 64 기 주주총회	
소집결의일	2019년 2월 22일 (주주총회 21일 전)	2018년 2월 23일 (주주총회 21일 전)	2017년 2월 24일 (주주총회 21일 전)	
공고일	2019년 2월 22일 (주주총회 21일 전)	2018년 2월 23일 (주주총회 21일 전)	2017년 2월 24일 (주주총회 21일 전)	
주주총회 관련사항 주주통보 방법	소집통지서, 전자공시	소집통지서, 전자공시	소집통지서, 전자공시	
외국인 주주가 이해가능한 수준의 소집통지 여부 및 방법	-	-	-	
개최일시	2019년 3월 15일 오전 10시 30분	2018년 3월 16일 오전 9시	2017년 3월 17일 오전 8시 30분	
개최일이 주주총회 집중일에 해당하는지 여부	미해당 (집중일: 3/22, 3/27, 3/28, 3/29)	미해당 (집중일: 3/23, 3/29, 3/30)	1)	
개최장소	서울시 종로구 새문안로 58 LG 광화문빌딩 지하 2층 강당	서울시 영등포구 여의대로 128 LG 트윈타워 동관 31층 소강당	서울시 영등포구 여의대로 128 LG 트윈타워 동관 31층 소강당	
세부사항	이사회 구성원 출석여부	2인 출석(총 7인)	3인 출석(총 7인)	3인 출석(총 7인)
	주주발언 주요내용	안건에 대한 찬성, 재청	안건에 대한 찬성, 재청	안건에 대한 찬성, 재청

1) 주주총회 집중일 제도는 2018년부터 시행

## 나. 주주총회 찬반비율 등

당사의 제66기(2019.3.15 개최) 및 제65기(2018.3.16 개최) 정기주주총회의 안건 별 찬반비율 및 가결 여부는 다음과 같습니다.

### <제66기 정기주주총회>

안건	결의 구분	회의 목적사항	가결 여부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 총수(①) <sup>1)</sup>	①중 의결권 행사 주식수(A) <sup>2)</sup>	찬성 주식수(B) (비율,%) <sup>3)</sup>	
						반대·기권 등 주식수(C) (비율,%) <sup>4)</sup>	
제 1 호 의안	보통	제 66 기 재무제표 및 연결재무제표 승인의 건	가결	38,659,249	22,896,383	22,545,184	98.5%
						351,199	1.5%
제 2 호 의안	특별	정관 변경의 건	가결	38,659,249	22,896,383	22,896,383	100.0%
						0	0.0%
제 3 호 의안	제 3-1 호	보통	가결	38,659,249	22,896,383	22,818,676	99.7%
	제 3-2 호	보통				77,707	0.3%
	제 3-3 호	보통				22,828,679	99.7%
제 4 호 의안	보통	사외이사 선임의 건 (윤춘성,민병일)	가결	38,659,249	22,896,383	67,704	0.3%
						19,957,889	87.2%
						2,938,494	12.8%
제 5 호 의안	보통	감사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양일수)	가결	26,370,033	10,607,166	10,607,166	100.0%
						0	0.0%
제 5 호 의안	보통	이사 보수한도 승인의 건	가결	38,659,249	22,896,383	17,858,948	78.0%
						5,037,435	22.0%

1) 감사, 감사위원 선임 안건은 의결권이 제한된 주식수를 제외한 주식수 기재

2) 주식수(A) = 주식수(B) + 주식수(C)

3) 찬성 주식수 비율(%) = (B/A) X 100

4) 반대·기권 등 주식수 비율(%) = (C/A) X 100

### <제65기 정기주주총회>

안건	결의 구분	회의 목적사항	가결 여부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 총수(①) <sup>1)</sup>	①중 의결권 행사 주식수(A) <sup>2)</sup>	찬성 주식수(B) (비율,%) <sup>3)</sup>	
						반대·기권 등 주식수(C) (비율,%) <sup>4)</sup>	
제 1 호 의안	보통	제 65 기 재무제표 및 연결 재무제표 승인의 건	가결	38,659,249	21,653,436	21,367,826	98.7%
						285,610	1.3%
제 2 호 의안	제 2-1 호	보통	가결	38,659,249	21,653,436	21,632,656	99.9%
	제 2-2 호	보통				20,780	0.1%
제 2 호 의안	보통	기타비상무이사 선임의 건 (하현회)	가결	38,659,249	21,653,436	14,969,702	69.1%
						6,683,734	30.9%

제 3 호 의안	보통	이사 보수한도 승인의 건	가결	38,659,249	21,653,436	21,653,436	100.0%
						0	0.0%

- 1) 감사, 감사위원 선임 안건은 의결권이 제한된 주식수를 제외한 주식수 기재
- 2) 주식수(A) = 주식수(B) + 주식수(C)
- 3) 찬성 주식수 비율(%) = (B/A) X 100
- 4) 반대·기권 등 주식수 비율(%) = (C/A) X 100

#### 다. 주주총회 집중일 개최 여부

당사는 주주총회 집중일에 주주총회를 개최한 내역이 없습니다.

#### 라. 서면투표·전자투표 도입 여부, 의결권 대리행사 권유 현황

상법 제368조의3에 따르면 주주는 정관이 정한 바에 따라 총회에 출석하지 아니하고 서면에 의하여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당사는 정관에 서면투표 관련 근거 조항을 마련하고 있지 않습니다.

당사는 상법 제368조의 4에 따른 전자투표제를 도입하고 있지 않습니다.

당사는 의결 정족수 확보 및 주주의 의결권 행사의 편의 도모를 위해 의결권 대리행사를 권유하고 있으며, 자본시장법에 따라 권유시작일 2일 전까지 위임장 용지 및 참고서류를 작성하여 전자공시시스템(dart.fss.or.kr)에 공시하고 있습니다. 추가적으로 이와 관련하여 홈페이지에도 안내를 하고 있습니다.

#### 마. 주주의 주주총회 참여를 위한 충분한 조치 여부

당사는 많은 주주가 주주총회에 참여하여, 의견을 적극적으로 개진할 수 있도록 한국상장회사협의회에서 지정하는 주주총회 집중일을 피해서 주주총회를 개최하였습니다.

#### (세부원칙 1-②)

기업은 주주가 주주총회의 의안을 용이하게 제안할 수 있게 하여야 하며, 주주총회에서 주주제안 의안에 대하여 자유롭게 질의하고 설명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 가. 주주제안 절차 안내 여부

상법 제363조의2에 의거, 의결권 없는 주식을 제외한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3 이상에 해당하는 주식을 가진 주주는 이사에게 주주총회일의 6주 전에 서면 또는 전자문서로 일정한 사항을 주주총회의 목적 사항으로 할 것을 제안할 수 있습니다.

당사는 주주제안과 관련하여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별도의 안내를 하고 있지는 않으나, 주주의 주주총회 참석 편의성을 제고하기 위해 주주총회 개최 일자는 주주총회 집중일을 피하여 정하고 있습니다.

#### 나. 주주제안 관련 내부 기준 및 절차 마련 여부

주주제안은 상법 제363조의2에 보장된 제도로써, 당사는 보고서 제출일 현재 주주제안 관련 별도의 내부 기준 및 절차를 추가로 마련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 다. 주주제안 내역, 이행상황 및 주주제안권 용이성

공시대상기간(2017.1.1~2019.6.3) 동안 주주제안 내역이 없습니다.

### 라. 주주총회 회의진행 관련

당사는 주주총회 진행 시, 회의진행을 방해하려는 의도가 있거나 질의가 중복되는 경우 외에는 의장의 진행에 따라 자유롭게 질의 및 설명 요구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세부원칙 1-③)**  
**기업은 배당정책 및 향후 배당계획 등에 대한 정보를 주주에게 안내하여야 하며, 관련 정책에 근거하여 결정되는 적절한 수준의 배당을 받을 주주의 권리는 존중되어야 한다.**

### 가. 배당정책, 배당계획 및 안내방식

당사는 정관 제41조에 근거하여, 금전과 주식으로 이익 배당이 가능합니다. 이익 배당은 정기주주총회에서 결정하며 매 결산기말 현재의 주주명부에 기재된 주주 또는 등록질권자에게 지급합니다. 당사의 배당계획은 다음의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배당계획을 수립합니다.

구분	내용
내부적 요소	- 당기순이익 - 상법상 배당가능이익 - 조달 계획 및 투자 계획
외부적 요소	- 주주의 기대치 - 매크로 경기 및 국내 증시, 당사 주가 추이 - 경쟁사 및 계열사 배당 동향

배당금 관련 안내는 매년 한국거래소 공시(현금·현물배당결정)를 통해 하고 있으며, 한국예탁결제원(www.ksd.or.kr)을 통해 배당통지서를 발송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상법 제464조의2에 따라 주주총회에서 이익배당을 결의하고 결의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배당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 나. 최근 3개 사업연도별 배당 내역

당사는 최근 3년간 매년 지속적으로 배당을 실시해 오고 있으며, 구체적인 배당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원)

사업 연도	결산월	주식 종류	주식 배당	현금배당					
				액면가	주당 배당금 <sup>1)</sup>	총배당금	시가 배당률 (%) <sup>2)</sup>	배당성향 <sup>3)</sup>	
								연결기준 (%)	별도기준 (%)
2018 (제 66 기)	12 월	보통주	-	5,000	250	9,664,812,250	1.6	-	-
2017 (제 65 기)	12 월	보통주	-	5,000	250	9,664,812,250	0.9	16.1	15.4
2016 (제 64 기)	12 월	보통주	-	5,000	250	9,664,812,250	0.8	16.6	16.6

1) 주당 배당금은 분기,중간 배당금과 결산 배당금을 합산



- 2) 시가배당률 = 주당 배당금/배당기준일 주가 x 100
- 3) 배당성향 = 배당금총액 / 연결(지배기업소유주지분) or 별도 당기순이익

**다. 최근 3개 사업연도별 차등배당, 분기배당, 및 중간배당 실시여부**

최근 3개 사업연도 중 차등배당, 분기배당, 중간배당 실시 내역이 없습니다.

**라. 배당 정보 및 배당 수준**

당사는 공시 등을 통해 배당 관련 정보(주당배당금, 배당금총액, 시가배당률 등)를 주주에게 충분히 제공하고 있으며, 적절한 수준의 배당을 받을 주주의 권리가 존중되도록 배당 계획 및 배당 정책을 수립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핵심원칙 2) 주주의 공평한 대우**

주주는 보유주식의 종류 및 수에 따라 공평한 의결권을 부여받아야 하고, 주주에게 기업정보를 공평하게 제공하는 시스템을 갖추는 노력을 해야 한다.

**(세부원칙 2-①)**

기업은 주주의 의결권이 침해되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주주에게 기업정보를 적시에, 충분히 그리고 공평하게 제공하여야 한다.

**가. 주식발행 현황**

당사의 보고서 제출일 현재 발행할 주식의 총수는 80,000,000주이며, 발행주식의 총수는 38,760,000주입니다. 발행주식의 총수는 발행할 주식 총수의 48.45%에 해당합니다.

구분	발행가능주식수(주)	발행주식수(주)	비고
보통주	80,000,000	38,760,000	발행주식수 68,000,000 주에서 29,240,000 주 감소 (2006년 (주)LG 패션 분할)
종류주	-	-	-

당사는 차등의결권을 부여하고 있지 않은 바, 모든 주주는 1 주당 1 의결권의 평등한 의결권을 부여 받고 있습니다.

**나. 종류주식 현황**

당사는 보통주 이외의 종류주식은 발행하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종류주주총회를 실시한 내역이 없습니다.

**다. IR 개최 현황**

당사는 매분기 결산이 이루어진 1월, 4월, 7월, 10월 말경 분기,반기 및 연간 실적발표(공정공시)를 하고, 국내 및 해외 기관투자자들을 대상으로 NDR을 정기적으로 진행합니다. 또한 수시로 투자자 IR미팅을 하고 있으며, 애널리스트 대상 사업설명회, 경영진 간담회 등을 통해 시장과 활발하게 소통하고 있습니다.

(2018.1.1~2019.6.3 기준)

일자	대상	미팅형식	주요 내용	
2018.02.01	국내 기관투자자	국내 NDR	2017년 실적 리뷰 및 향후 전망	
2018.02.02	국내 기관투자자			
2018.02.05	국내 기관투자자			
2018.02.06	국내 기관투자자			
2018.02.21	국내 기관투자자			Corporate Day
2018.02.28	해외 기관투자자	Conference Call		
2018.03.13	해외 기관투자자	Conference Call		
2018.03.22	국내 기관투자자	Corporate Day		
2018.03.26	국내 기관투자자	국내 NDR	2018년 1분기 실적 리뷰 및 향후 전망	
2018.03.27	국내 기관투자자			
2018.04.26	국내 기관투자자	국내 NDR		
2018.04.27	국내 기관투자자			
2018.05.02	국내 기관투자자			
2018.06.26	국내 기관투자자	Corporate Day		
2018.07.26	국내 기관투자자	국내 NDR		2018년 2분기 실적리뷰 및 향후 전망
2018.07.27	국내 기관투자자			
2018.07.30	국내 기관투자자			
2018.07.31	국내 기관투자자			
2018.09.10	해외 기관투자자	해외 NDR		
2018.09.11	해외 기관투자자			
2018.09.12	해외 기관투자자			
2018.09.13	해외 기관투자자	국내 NDR		
2018.09.17	국내 기관투자자			
2018.09.18	국내 기관투자자			
2018.10.25	국내 기관투자자	국내 NDR	2018년 3분기 실적리뷰 및 향후 전망	
2018.10.26	국내 기관투자자			
2018.10.29	국내 기관투자자			
2018.10.30	국내 기관투자자			
2019.02.21	국내 기관투자자	Analyst 오찬간담회		
2019.03.19	국내 기관투자자	Corporate Day		
2019.04.25	국내 기관투자자	국내 NDR		2019년 1분기 실적리뷰 및 향후 전망
2019.04.26	국내 기관투자자			
2019.04.29	국내 기관투자자			
2019.04.30	국내 기관투자자			

※ 대상기간 동안 투자자가 당사에 방문한 IR 미팅은 70 건임.

## 라. 홈페이지 현황 및 영문공시

당사는 회사 홈페이지(www.lgicorp.com)를 통해 IR 담당부서(IR 팀)의 전화번호(02-6984-5505) 및 이메일(ir@lgi.co.kr)을 모두 공개하고 있으며, 영문 홈페이지(www.lgicorp.com/en)를 통해서도 안내를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영문 공시는 별도로 하고 있지 않습니다.

## 마. 공정공시 내역

당사의 공정공시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2018.1.1~2019.6.3 기준)

공시일자	공시제목	주요내용
2018.01.31	연결재무제표기준영업(잠정)실적	2017년 4분기 매출액, 영업이익 등 잠정실적
2018.04.25		2018년 1분기 매출액, 영업이익 등 잠정실적
2018.07.25		2018년 2분기 매출액, 영업이익 등 잠정실적
2018.10.24		2018년 3분기 매출액, 영업이익 등 잠정실적
2019.01.31		2018년 4분기 매출액, 영업이익 등 잠정실적
2019.04.24		2019년 1분기 매출액, 영업이익 등 잠정실적

## 바. 불성실공시법인 지정여부

당사는 불성실공시법인으로 지정된 적이 없습니다.

## 사. 기업정보 제공 수준

당사는 주권 상장사로서 한국거래소 및 금융감독원 공시를 수행하고 있으며, LG기업집단 소속회사로 공정거래위원회 공시 또한 수행하고 있습니다. 각 공시를 통해서 회사의 재무·영업 관련 사항을 주주에게 적시에, 충분히, 공정하게 제공하고 있습니다. 향후 보다 적극적인 정보 제공을 위해 자율공시 및 공정공시를 적극 활용하는 정책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 (세부원칙 2-②)

기업은 지배주주 등 다른 주주의 부당한 내부거래 및 자기거래로부터 주주를 보호하기 위한 장치를 마련·운영하여야 한다.

## 가. 내부거래 및 자기거래 통제 장치(정책)

당사는 경영진 또는 지배주주의 사적인 이익을 목적으로 하는 내부거래 및 자기거래를 방지하기 위한 내부통제장치를 마련하고 있습니다. 이사회 규정 제13조에 이사 등과 회사간의 거래를 이사회 승인사항으로 정하고 있으며, 상법 제542조의 9에 따라, 회사의 최대주주 및 특수관계인과의 거래 역시 이사회 승인사항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당사는 LG 기업집단 소속 회사로서 공정거래법 제11조의 2에 따라, 계열회사와의 50억 이상의 내부거래에 대해 해당 거래 발생 전 적법하게 사전 이사회 승인을 거쳐 공시하고 있습니다. 위와 관련된 공시는 전자공시시스템(dart.fss.or.kr)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나. 지배주주 등 이해관계자와의 거래내역

### (1) 가지급금 및 대여금(유가증권 대여 포함)내역

(2018.12.31 기준, 백만원)

법인명	관계	종류	일자	목적	변동내역					미수 이자	조 건
					기초	증가	감소	환산	기말		
Bowen Investment (Australia) Pty. Ltd.	종속 회사	대여금	2011.10.04	운영 자금	59,821	0	0	-3,391	56,430	88	6M BBSY+1.33%
PT. Indonesia Renewable Resources	종속 회사	대여금	2012.10.30	운영 자금	7,442	0	0	324	7,766	352	3ML+4.5%, 6ML+3.9%
PT.Green Global Lestari	종속 회사	대여금	2010.01.25	운영 자금	18,075	0	0	787	18,862	987	6ML+2.06%, 6ML+2.30%
LG International Yakutsk Ltd.	종속 회사	대여금	2009.10.19	운영 자금	10,168	0	0	443	10,611	1,499	6ML+2.2%
PT.Ganda Alam Makmur	종속 회사	대여금	2012.08.06	운영 자금	38,570	0	0	1,682	40,252	14,566	4.5% (고정)
Kernhem B.V.	관계 회사	대여금	2006.01.25	운영 자금	42,667	0	0	1,859	44,526	6,680	3ML+2%
Musandam Power Company SAOC	관계 회사	대여금	2017.11.29	운영 자금	5,459	0	-2,908	112	2,663	20	4.6% (고정)
합 계					182,202	0	-2,908	1,816	181,110	24,192	-

### (2) 주식담보제공 내역

(2018.12.31 기준, 백만원)

법인명	관계	종류	일자	목적	변동내역					미수이자
					기초	증가	감소	환산	기말	
PT. Binsar Natorang Energi	종속 회사	주식 담보	2016.10.25	PF 대출	39,211	15,370	-	2,026	56,607	-

### (3) 채무보증 현황

(2018.12.31 기준, 백만원)

구분	제공받는 자	금융기관	목적	한도	사용금액
종속기업	LG International (America) Inc.	Mizuho 外	현지금융	134,172	-
	LG International (Japan) Ltd.	MUFG 外	현지금융	132,099	384
	LG International (Hong Kong) Ltd.	SMBC 外	현지금융	453,045	745
	LG International (Singapore) Pte. Ltd.	SMBC 外	현지금융	343,420	28
	LG International (Deutschland) GmbH	신한은행 外	현지금융	50,826	-
	Bowen Investment (Australia) Pty Ltd	ANZ 外	현지금융	59,648	21,268
	LG International (China) Corp.	KEB 하나 外	현지금융	29,410	-
	LG International (Shanghai) Corp.	SC	현지금융	-	-
	LG International India Private Limited	Citi	현지금융	30	3
	PT.Batubara Global Energy	SMBC 外	현지금융	40,352	11
	Steel Flower Electric & Machinery(Tianjin) Co., Ltd.	HSBC 外	현지금융	46,278	10,905
	PT.Parna Agromas	SMBC 外	현지금융	9,530	8
	Guangzhou Steel Flower Electrical & Machinery Co., Ltd.	KEB 하나 外	현지금융	7,422	-
	PT.Mega Prima Persada	SMBC 外	현지금융	16,956	11
	PT.Ganda Alam Makmur (GAM)	KDB 산업은행 外	현지금융	60,546	45,300
	PT. Binsar Natorang Energi (BNE)	우리은행	현지금융	1,132	1,132
	Haiphong Steel Flower Electrical & Machinery Co., Ltd.	HSBC 外	현지금융	13,276	4,395
	Highland Cement International Co., Ltd.	신한은행	현지금융	12,819	7,966
합 계				1,410,961	92,156

## (4) 자산양수도 등

(2018.1.1~2018.12.31 기준, 백만원)

거래상대방	관계	거래종류	거래일자	거래대상물	거래목적	거래금액
LG International (Deutschland) GmbH	종속회사	주식 취득	'18.04.20 ~ '18.04.24	출자증권	추가 출자	3,262
PT. Green Global Lestari (GGL)	종속회사	주식 취득	'18.05.17 ~ '18.09.04	출자증권	추가 출자	75,316
PT. Binsar Natorang Energi	종속회사	주식 취득	'18.02.13 ~ '18.08.14	출자증권	추가 출자	15,367
Highland Cement International Co., Ltd.	종속회사	주식 취득	'18.02.13	출자증권	추가 출자	2,186
당진탱크터미널(주)	종속회사	주식 취득	'18.02.28 ~ '18.07.04	출자증권	추가 출자	1,900
United Copper & Moly LLC	관계회사	주식 취득	'18.01.04 ~ '18.07.20	출자증권	추가 출자	5
Oman International Petrochemical Industry Company L.L.C	관계회사	주식 취득	'18.01.08 ~ '18.12.31	출자증권	추가 출자	2,794
합 계						100,830

## (5) 영업거래

(2018.1.1~2018.12.31 기준, 백만원)

법인명	관계	거 래 내 용			
		종류	기간	물품 및 서비스명	금액
LG 전자	계열회사	매출, 매입 등	2018.1.1 ~ 2018.12.31	전자부품 매출, 자동차 설계/설비, 용역 매입	531,854
LG 화학	계열회사			석탄 매출, 석유화학제품 매입	368,134
Tianjin LG Bohai Chemical Co., Ltd.	계열회사			석유화학제품 매출	195,900
PT. Batubara Global Energy (BGE)	종속회사			석탄 매입 등	257,369
LG International (America) Inc.	종속회사			전자부품 매출/매입	297,868
LG International (Singapore) Pte. Ltd.	종속회사			전자부품 매출/매입	405,304
합 계					2,056,429

### 3. 이사회

#### (핵심원칙 3) 이사회 기능

이사회는 기업과 주주이익을 위하여 기업의 경영목표와 전략을 결정하고, 경영진을 효과적으로 감독하여야 한다.

#### (세부원칙 3-①)

이사회는 경영의사결정 기능과 경영감독 기능을 효과적으로 수행하여야 한다.

#### 가. 이사회 의 효과적인 업무수행을 지원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

당사는 이사회 사무국을 통해서 이사회 의 원활한 활동을 지원하고 있는바, 이사회 개최 전 이사회 상정 안건에 대해 사외이사 및 기타비상무이사에게 사전 설명을 하고 있으며, 이사의 직무수행에 필요한 요청 사항 지원 등의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사회 구성원의 지속적인 효율성 제고를 위해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 나. 이사회 의 심의·의결사항

당사 이사회는 주주총회에 관한 사항, 경영에 관한 사항, 중요한 재무에 관한 사항, 중장기 전략 및 사업 정책에 관한 사항 등을 의결합니다.

이사회에서 의결하는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정관>

##### 제28조 (이사회)

이사회는 이사로 구성하며 법령 또는 정관에서 주주총회의 결의사항으로 정하고 있는 것을 제외하고 본 회사 업무의 중요사항을 의결한다.

#### <이사회규정>

##### 제13조 (부의사항)

① 이사회에 부의할 사항은 다음과 같다.

#### 1. 상법상의 이사의 결의사항

- 주주총회의 소집
- 영업보고서의 승인
- 재무제표의 승인
- 대표이사의 선임 및 해임
- 공동대표의 결정
- 지배인의 선임 및 해임
- 지점의 설치, 이전 및 폐지
- 신주발행사항의 결정, 실권주의 처리
- 일반공모증자방식에 의한 신주발행
- 사채의 모집
- 전환사채의 발행사항의 결정
- 신주인수권부 사채의 발행사항의 결정
- 신주인수권의 양도성의 결정
- 준비금의 자본전입
- 이사 등과 회사 간의 거래의 승인
- 이사의 회사 기회 및 자산 유용 승인
- 이사의 경업 승인 및 개입권의 행사
- 위원회의 설치, 위원회 위원의 선임 및 해임
- 위원회 운영 규정의 제정 및 개·폐
- 이사회내 위원회의 결의사항에 대한 재결의. 단, 감사위원회 결의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함.
- 상법 제542조의9 제5항에 따른 특수관계인과의 거래총액한도승인
- 준법지원인 선임
- 준법통제기준의 제정 및 개·폐

#### 2. 주주총회 상정안에 관한 사항

- 영업을 전부, 중요한 일부의 양도
- 주식배당
- 자본감소
- 정관 변경안
- 이사 및 감사위원회 위원의 선임·해임안
- 이사의 보수안
- 이사의 회사에 대한 책임의 면제

- 회사의 해산, 합병, 분할합병, 분할, 회사의 계속
- 간이합병, 간이분할합병, 소규모합병 및 소규모분할합병의 결정
- 주식의 소각
- 영업 전부의 임대 또는 경영위임, 타인과 영업의 손익 전부를 같이하는 계약, 기타 이에 준할 계약의 체결이나 변경 또는 해약
- 주식의 액면미달발행
- 주식매수선택권의 부여
- 명의개서대리인의 지정
- 주주명부 폐쇄 및 기준일의 결정
- 기타 주주총회에 부의할 의안

3. 중요한 재무에 관한 사항

- [별표] 기재의 일정 규모 이상의 투자, 출자, 자산의 처분, 자금의 차입, 타인을 위한 담보제공 및 보증
- 공정거래법상의 대규모 내부거래

4. 중장기전략 및 사업정책에 관한 사항

- 전략적 사업방향
- 당년도 업적평가 및 차년도 사업계획, 목표합의

5. 인사관련 사항

- 집행임원에 관한 인사 및 보수
- 재무담당 최고집행임원의 선임

6. 기타 대표이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별표] 중요한 재무에 관한 사항 세부기준

구분	상정기준
- 출자, 투자 및 그 처분	- 건당 4백억원 초과
- 자산의 취득 및 처분 <sup>1)</sup>	- 건당 5백억원 초과
- 자금의 차입 <sup>2)</sup>	- 건당 1천억원 초과
- 타인을 위한 담보제공 및 보증	- 건당 4백억원 초과

1) 무역거래에서 통상적이고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채권매각 등은 제외

2) Credit Line 설정 제외

**다. 이사회에 관한 중 이사회 내 위원회 및 대표이사에게 위임된 사항**

당사는 정관 제28조의 2에 따라 이사회에 의결로 이사회 내에 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으며, 각 위원회의 권한, 운영 등에 관하여는 이사회에 의결로 정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이사회 규정 제14조에 따라 이사회는 이사회에 의결을 거쳐야 할 사항 중 법령 또는 정관에 정하여진 것을 제외하고는 이사회에 의결로써 일정한 범위를 정하여 대표이사 또는 경영회의에 그 결정을 위임할 수 있습니다.

당사는 상법상 설치가 의무화된 감사위원회와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 외에는, 별도의 이사회 내 위원회를 설치하고 있지 않습니다.



## 라. 이사회 효과적인 기능 수행 여부

당사 이사회는 이사회 규정 제8조에 의거, 분기 1회 개최 및 필요에 따라 수시로 개최하여 경영의사결정과 경영감독 기능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고 있습니다.

### (세부원칙 3-②)

이사회는 최고경영자 승계정책(비상시 선임정책 포함)과 내부통제정책(리스크관리, 준법경영, 내부회계관리 등)을 마련하여 운영하고, 지속적으로 개선·보완하여야 한다.

## 가. 최고경영자 승계정책

최고경영자 승계와 관련하여서는 이사회에서 최고경영자(대표이사) 후보를 선별 및 추천함에 있어 회사와 주주의 이익에 부합하는 방향으로 회사를 경영하고 회사의 핵심가치와 비전을 효율적으로 실행할 수 있는 역량을 갖춘 후보자인지 여부를 검증합니다.

당사는 정관 제27조에 따라 '회장 유고시에는 부회장이, 부회장 유고시에는 사장이, 사장 유고시에는 부사장, 전무, 상무의 순으로 그 직무를 대행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사회 규정 제5조에 따라 '의장이 궐위 또는 유고로 인하여 의장의 직무를 행할 수 없을 때에는 차순위집행임원인 이사(회장, 부회장, 사장, 부사장, 전무, 상무), 기타 비상무이사의 순으로, 동순위의 대행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 그 중 연장자가 의장의 직무를 대행 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나. 내부통제정책

### (1) 리스크 관리 및 준법경영

당사는 체계적이고 효과적인 리스크 관리를 위해 중요한 사안은 이사회에 보고 또는 승인 사항으로 제안하고 있습니다. 또한, 정기적으로 회사의 내부 감사부서로부터 정기감사활동에 대한 결과를 보고받으며, 발생 가능한 리스크를 적절히 관리하고 있습니다. 당사는 상법에 따라 이사회 내 위원회로 감사위원회를 두고 있으며, 감사위원회 규정 제3조에 근거한 감사위원회의 직무와 권한은 다음과 같습니다.

- ① 감사위원회는 회사의 회계와 업무를 감사하며, 이를 위하여 언제든지 이사에 대하여 영업에 관한 보고를 요구하거나 회사의 업무와 재산 상태를 조사할 수 있다.
- ② 감사위원회는 회의의 목적 사항과 소집의 이유를 기재한 서면을 이사회에 제출하여 임시주주총회의 소집을 청구할 수 있다.
- ③ 감사위원회는 그 직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상법상 자회사에 대해 영업의 보고를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자회사가 지체 없이 보고를 하지 아니할 때 또는 그 보고의 내용을 확인할 필요가 있는 경우 자회사의 업무와 재산 상태를 조사할 수 있다.
- ④ 감사위원회는 법령 및 정관에 정하여진 사항, 이사회로부터 위임 받은 사항을 의결한다.
- ⑤ 감사위원회는 회의의 목적사항과 소집의 이유를 기재한 서면을 이사회에 제출하여 이사회에 소집을 청구할 수 있다.

당사는 준법경영을 위해 상법 제542조의13에 따라 법무담당 임원을 준법지원인으로 선임하고, 정기적으로 준법 점검을 실시하며 예방적 차원의 교육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 (2) 공시 통제

당사는 IR팀이 공시정보관리규정에 근거하여 공시 통제 및 공시 수행을 하고 있습니다. 조직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IR팀 조직 현황>

부서(팀)명	직원수(명)	직위	주요 활동내역
IR 팀	5	팀장 1명 PM(Project Manager) 3명 선임 1명	- 공시 통제 및 수행(금감원,공정위,거래소) - IR 활동(투자자 면담) - 주주총회 진행 및 주주친화정책 수립 등

**다. 내부회계관리**

당사는 2018년 외감법 및 내부회계관리제도 모범규준 개정에 따라, 개정 사항을 반영하여 내부회계관리규정을 개정하고 기존 내부회계관리제도를 재구축하였습니다. 또한, 내부회계관리제도의 실효성 제고 및 독립적 평가 수행을 위해 내부회계전담부서를 신설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2019년에는 재구축된 내부회계관리제도에 따라 원활하게 운영되고 정착될 수 있도록 전사적인 노력을 기울일 계획입니다.

**(핵심원칙 4) 이사회 구성**

이사회는 효율적으로 의사를 결정하고 경영진을 감독할 수 있도록 구성하여야 하며, 이사는 다양한 주주의견을 폭넓게 반영할 수 있는 투명한 절차를 통하여 선임되어야 한다.

**(세부원칙 4-①)**

이사회는 효과적이고 신중한 토의 및 의사결정이 가능하도록 구성하여야 하며, 경영진과 지배주주로부터 독립적으로 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충분한 수의 사외이사를 두어야 한다.

**가. 이사회 관련 조직도**

이사회는 보다 전문적인 운영을 위해 이사회 내 2개 위원회를 두고 있으며, 위원회 업무에 따라 관련 사내 담당부서가 업무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 나. 이사회 및 이사회 내 위원회의 구성 등

당사 정관 제24조에 따라 당사 이사 수는 3인 이상, 7인 이하를 두되 주주총회에서 선임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또한 상법 제542조의 8에 따라 자산 2조원 이상의 상장회사의 사외이사는 3 이상으로 하되, 이사 총수의 과반수가 되도록 하여야 합니다. 이에 따라 당사 이사회는 사외이사(4인), 기타비상무이사(1인), 사내이사(2인) 총 7인의 이사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보고서 제출일 현재 당사 이사 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구분	성명	직책	최초선임일	임기만료일	전문분야
사내이사	윤춘성	이사회 의장	2019.3.15	2019.3.15로부터 3년	CEO
사내이사	민병일	CFO	2019.3.15	2019.3.15로부터 2년	CFO
기타비상무이사	이재원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 위원	2019.3.15	2019.3.15로부터 2년	경영관리 등
사외이사	정운오	감사위원회 위원	2014.3.14	2017.3.17로부터 3년	회계·재무전문가
사외이사	이원우	감사위원회 위원	2017.3.17	2017.3.17로부터 3년	법률
사외이사	양일수	감사위원회 위원/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 위원	2019.3.15	2019.3.15로부터 3년	회계·재무전문가
사외이사	허은녕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 위원	2016.3.18	2019.3.15로부터 3년	에너지·자원 등

구분	성명	주요경력
사내이사	윤춘성	연세대(院) 지질학 학사 / 석사 석탄사업부장 인니지역총괄 자원부문장

사내이사	민병일	서울대 언어학 학사 LG 전자(주) 금융담당
기타비상무이사	이재원	연세대 정치외교학 학사 유플러스 IoT 상품담당 現) (주)LG 통신서비스팀장
사외이사	정운오	서울대 국제경제학 학사 美)코넬대院 경영학 석사 美)UCLA 院 회계학 박사 한국세무학회 회장 서울대 경영대 교수
사외이사	이원우	서울대(院) 법학 학사 / 석사 獨)함부르크대 공법 박사 한림대 사회과학대 법학부 조교수 한양대 법과대 법학과 부교수 서울대 법과대학장 겸 법학전문대학원장 現)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사외이사	양일수	연세대(院) 경영학 학사 / 석사 홍익대(院) 경영학 박사 現) 이정지유희회계법인 파트너
사외이사	허은녕	서울대(院) 자원공학 학사 / 석사 美)펜실베니아주립대院 자원환경경제학 박사 現) 한국자원공학회 정책위원장 現) 한국자원경제학회 학회장 現) 서울대 에너지시스템공학부 교수

보고서 제출일 현재 당사 이사회 내 위원회 구성 및 주요 역할은 다음과 같습니다.

위원회	구성			위원회의 주요 역할
	직책	구분	성명	
감사위원회	위원장	사외이사	정운오	경영진에 대한 내부감시 기능 수행 및 회계정보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하여, 회사의 업무, 재산상태 조사 및 경영진에 대한 영업보고 요구 등을 비롯한 감독 수행
	위원	사외이사	이원우	
	위원	사외이사	양일수	
사외이사후보 추천위원회	위원	기타비상무이사	이재원	주주총회에 선임할 사외이사 후보를 검토하고 선정하여 추천하는 역할 수행
	위원	사외이사	양일수	
	위원	사외이사	허은녕	

#### 다. 사외이사 관련 사항

당사 사외이사는 총 4인으로 전체 구성원인 7명 대비 57%입니다. 사외이사의 연임 현황 및 겸직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구분	성명	연임 현황	겸직 사항
사외이사	정운오	재선임(1 회)	금호석유화학(주) 사외이사/감사위원회 위원
사외이사	이원우	신규 선임	(주)레이언스 사외이사/감사위원회 위원
사외이사	양일수	신규 선임	이정지유희회계법인 파트너
사외이사	허은녕	재선임(1 회)	-

**라. 대표이사와 이사회 의장의 분리여부 등**

당사는 이사회 규정 제5조에 의거, 이사회의 의장은 이사 중에서 이사회가 선임하도록 하고 있으며, 보고서 제출일 현재 이사회 의장은 윤춘성 대표이사입니다. 현 의장은 이사회에서, 회사의 석탄사업부장, 인니지역총괄, 자원부문을 역임하며 석탄, 팜 등 자원사업을 회사의 주요 사업으로 키워 낸 경험과 전문성을 바탕으로 이사회를 잘 이끌어 갈 책임자라고 판단하여 선임하였습니다. 추가적으로 당사는 선임(先任)사외이사를 별도로 선임하지는 않습니다.

**마. 이사회 구성의 효율성, 독립성 등**

당사 이사회는 효과적이고 신중한 토의 및 의사결정이 가능하도록, 전문성과 다양성(상기 이사별 주요경력 참조)을 갖추고 있습니다. 또한 경영진과 지배주주로부터 독립적으로 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이사회 구성원 총 7명 대비 57%에 해당하는 4인의 사외이사를 선임하고 있습니다.

**(세부원칙 4-②)**  
**이사회는 기업경영에 실질적으로 기여할 수 있도록 지식 및 경력 등에 있어 다양한 분야의 전문성 및 책임성을 지닌 유능한 자로 구성하여야 한다.**

**가. 이사의 전문성, 책임성 및 다양성을 확보하기 위한 기업정책**

당사는 경제, 법률, 공정거래, 리스크 관리, 에너지-자원 산업 등 다양한 배경과 전문성을 보유한 이사를 이사회에 참여시켜 전문성을 제고하고, 경영진에 대한 견제 기능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특히, 감사위원회는 회계 또는 재무 분야에서 종사한 경험이 있는 전문가를 1인 이상 포함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나. 이사 선임 및 변동 내역**

당사는 제64기 주주총회(2017.3.17)에서 정운오 사외이사, 이원우 사외이사를 선임하였습니다. 제65기 주주총회(2018.3.16)에서는 송치호 사내이사, 하현회 기타비상무이사를 선임하였습니다. 제 66기 주주총회(2019.3.15)에서는 양일수 사외이사, 허은녕 사외이사, 이재원 기타비상무이사, 윤춘성 사내이사, 민병일 사내이사를 선임하였습니다. 공시대상기간 직전 사업연도 개시시점부터 공시서류제출일 현재까지 이사 선임 및 변동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2017.1.1~2019.6.3 기준)

구분	성명	최초선임일	임기만료일	변동일	변동사유	현재 재직여부
사외이사	정운오	2014.3.14	2017.3.17로부터 3년	2017.3.17	재선임	재직
	이원우	2017.3.17	2017.3.17로부터 3년	2017.3.17	신규 선임	재직
	양일수	2019.3.15	2019.3.15로부터 3년	2019.3.15	신규 선임	재직
	허은녕	2016.3.18	2019.3.15로부터 3년	2019.3.15	재선임	재직
기타 비상무이사	하현회	2015.3.13	2018.3.16로부터 3년	2019.3.15	사임	퇴직
	이재원	2019.3.15	2019.3.15로부터 2년	2019.3.15	신규 선임	재직

사내이사	송치호	2014.3.14	2018.3.16 으로부터 3년	2019.3.15	사임	퇴직
	윤춘성	2019.3.15	2019.3.15 로부터 3년	2019.3.15	신규 선임	재직
	민병일	2019.3.15	2019.3.15 로부터 2년	2019.3.15	신규 선임	재직

#### 다. 이사회 구성의 경쟁력 여부

당사 이사회는 다양한 배경을 가진 전문성 및 책임성을 갖춘 유능한 이사로 구성되어 있으며, 경쟁력을 갖추고 있습니다.

#### (세부원칙 4-③)

이사 후보 추천 및 선임과정에서 공정성과 독립성이 확보되도록 하여야 한다.

#### 가.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 현황

당사는 상법 제542조의8에 따라 사외이사 후보를 추천하기 위한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를 설치 및 운영하고 있습니다. 당사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는 사외이사의 선임 및 위원회 운영에 있어 공정성과 독립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사외이사 2인과 기타비상무이사 1인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2018년에는 주주총회에서 사외이사 선임안건이 상정되지 않아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를 개최하지 않았습니다. 2019년에는 총 1회의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가 개최되었으며 주요활동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2018.1.1~2019.6.3 기준)

위원회명	구성원	활동내역		
		개최일자	의안내용	가결여부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	하현회(위원장) 정운오(위원) 이원우(위원)	2019.2.22	1.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 위원장 선임	가결
			2.사외이사 후보 추천 승인	가결

보고서 제출일 현재 기준 당사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 구성 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2019.6.3 기준)

위원회	구성			위원회의 주요 역할
	직책	구분	성명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	위원	사외이사	양일수	주주총회에 선임할 사외이사 후보를 검토하고 선정하여 추천하는 역할 수행
	위원	사외이사	허은영	
	위원	기타비상무이사	이재원	

#### 나. 이사 후보에 대한 주주向 정보 제공 관련

당사는 최근 2년간, 주주가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이사 후보에 대한 정보를 검토할 수 있게 하고자 주주총회 21일전에는 공시(주주총회 소집공고)를 통해 정보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2018.1.1~2019.6.3 기준)

정보제공일	주주 총회일	이사 후보		정보제공 내역
		구분	성명	
2018.2.23 (주주총회 21일전)	2018.3.16	사내이사	송치호	1. 후보자 성명, 생년월일, 사외이사후보자 여부, 최대주주와의 관계, 추천인 2. 주된 직업, 약력, 해당법인과의 최근3년간 거래내역
		기타비상무이사	하현희	
2019.2.22 (주주총회 21일전)	2019.3.15	사내이사	윤춘성	
		사내이사	민병일	
		사외이사	허은녕	
		사외이사	양일수	
		기타비상무이사	이재원	

2019.3.15일자 주주총회에서 허은녕 사외이사가 재선임 되었습니다. 재선임 허은녕 사외이사의 이사회 참석내역은 주주총회소집공고에 공시하였습니다.

#### 다. 집중투표제 채택 여부

당사는 정관 제24조에 의거 집중투표제를 채택하고 있지 않으나, 상법에 따라 소수주주의 이사후보 추천 권리가 보장되어 있습니다. 다만, 과거 3개년 주주총회 기간 중 소수주주의 이사후보 추천이 없었습니다.

#### 라. 이사 선임 과정의 공정성 및 독립성 여부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는 관련 법령 및 규정에 근거하여 설치되어 있으며, 주주에게 이사 후보에 대한 충분한 정보를 적정한 기간 전에 제공하는 등 이사후보 추천 및 선임 과정에서 공정성 및 독립성은 충분히 확보되어 있습니다.

#### (세부원칙 4-④)

기업가치의 훼손 또는 주주권익의 침해에 책임이 있는 자를 임원으로 선임하지 않아야 한다.

#### 가. 임원현황

보고서 제출일 현재 기준 당사 임원 현황(미등기 임원 포함)은 다음과 같습니다.

성명	성별	생년	직위	등기 임원 여부	상근 여부	담당 업무	주요경력
----	----	----	----	----------------	----------	----------	------

유 춘 성	남	1964	부사장	등기 임원	상근	대표이사 CEO	연세대(院) 지질학 학사 / 석사
							석탄사업부장
							인니지역총괄
							자원부문장
민 병 일	남	1966	상무	등기 임원	상근	CFO	서울대 언어학 학사
							LG 전자(주) 금융담당
이 재 원	남	1971	기타 비상무 이사	등기 임원	비상근	기타비상무이사	연세대 정치외교학 학사
							유플러스 IoT 상품담당
							(주)LG 통신서비스팀장
정 운 오	남	1954	이사	등기 임원	비상근	사외이사/감사위원	서울대 국제경제학 학사
							美)코넬대(院) 경영학 석사
							美)UCLA 院 회계학 박사
							한국세무학회 회장
							서울대 경영대 교수
허 은 녕	남	1964	이사	등기 임원	비상근	사외이사	서울대(院) 자원공학 학사 / 석사
							美)펜실베니아주립대(院) 자원환경경제학 박사
							現) 한국자원공학회 정책위원장
							現) 한국자원경제학회 학회장
양 일 수	남	1964	이사	등기 임원	비상근	사외이사/감사위원	연세대(院) 경영학 학사 / 석사
							홍익대(院) 경영학 박사
							現) 이정지유희회계법인 파트너
이 원 우	남	1963	이사	등기 임원	비상근	사외이사/감사위원	서울대(院) 법학 학사 / 석사
							獨)함부르크대 공법 박사
							한림대 사회과학대 법학부 조교수
							한양대 법과대 법학과 부교수
							서울대 법과대학장 겸 법학전문대학원장
							現)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계 용 욱	남	1964	전무	미등기 임원	상근	자원부문장	서울대(院) 자원공학 학사 / 석사
							두바이지사장
							Project 사업부장
							산업재 2 부문장
박 용 환	남	1964	전무	미등기 임원	상근	인프라부문장	연세대 행정학 학사
							금융담당
							경영기획담당
							CFO
정 철 승	남	1960	상무	미등기 임원	상근	일본법인장	한국외대 일본어학 학사
							부품소재팀장
							싱가폴법인장
김 범 순	남	1967	상무	미등기 임원	상근	법무담당	서울대 법학 학사
							美)미네소타대(院) 법학 석사
							(주)LG 법무팀 부장
							(주)LG 유플러스 법무팀장
구 혁 서	남	1967	상무	미등기 임원	상근	금속사업부장	성균관대 법학 학사
							핀)알토대(院) MBA 석사
							북경지사장



							석탄영업 2 팀장
							석탄 2 사업부장
박 동 환	남	1966	상무	미등기 임원	상근	플랫폼사업부장	한국외대 영어학 학사
							핀)알토대院 MBA 석사
							기계항공사업부장
							에너지솔루션사업부장
							A&A 사업부장
권 용 민	남	1966	상무	미등기 임원	상근	북경지사장	中)천진대 기계학 학사
							대련지사장
							열연 1 팀장
정 용 훈	남	1964	상무	미등기 임원	상근	인프라 1 사업부장	중앙대 경영학 학사
							두바이지사장
							자카르타지사장
							Project 사업부장
박 진 호	남	1965	상무	미등기 임원	상근	IT 사업부장	고려대 서어서문학 학사
							수지사업부장
							미국법인장
							화학사업부장
홍 형 기	남	1965	상무	미등기 임원	상근	석탄개발사업부장	서강대 경영학 학사
							경영혁신팀장
							산업재 2 부문경영분석팀장
							자원·원자재부문경영분석팀장
이 창 현	남	1970	상무	미등기 임원	상근	인니석탄법인장	인니석탄법인장
							서강대 경제학 학사
							핀)알토대院 MBA 석사
							인니석탄판매법인장
							석탄영업 1 팀장
백 풍 렬	남	1969	상무	미등기 임원	상근	경영전략담당	연세대(院) 경영학 학사 / 석사
							LG 경제연구원 연구위원
							성장전략실장
							생활자원 TFT 장
강 성 철	남	1969	상무	미등기 임원	상근	정도경영담당	식량자원사업부장
							서울대 경제학 학사
							美)서던캘리포니아대院 MBA 석사
							LG 전자(주) 유럽재무팀, 정도경영팀 부장
이 강 녕	남	1969	상무	미등기 임원	상근	석탄영업사업부장	고려대 철학 학사
							핀)알토대院 MBA 석사
							석탄영업 2 팀장
							석탄 2 사업부장
박 동 수	남	1965	상무	미등기 임원	상근	인니팜법인장	서강대 경제학 학사
							인니팜법인장
문 현 진	남	1970	상무	미등기 임원	상근	HR 담당	경희대 경제학 학사
							인사팀장
김 준	남	1971	상무	미등기 임원	상근	인프라 2 사업부장	중앙대 화공학 학사
							두바이지사장

형						무스카트지사장
---	--	--	--	--	--	---------

- ※ 2018년 1월 1일자로 윤춘성 부사장은 전무→부사장으로 승진하였음.
- ※ 2018년 12월 1일자로 민병일 상무는 LG전자(주)로부터 전입함.
- ※ 2019년 1월 1일자로 박동수 상무, 문현진 상무, 김준형 상무가 미등기임원으로 신규 선임됨.
- ※ 2019년 3월 15일자로 윤춘성 부사장은 등기임원 및 대표이사로 선임됨.
- ※ 2019년 3월 15일자로 민병일 상무는 등기임원으로 선임됨.
- ※ 2019년 3월 15일자로 박용환 전무는 등기임원→미등기임원으로 변경됨.
- ※ 2019년 3월 15일자로 허은영 사외이사가 재선임 되었으며, 김동욱 사외이사가 임기 만료되어 양일수 사외이사가 신규 선임됨.
- ※ 2019년 3월 15일자로 하현희 기타비상무이사가 사임하여 이재원 기타비상무이사가 신규 선임됨.
- ※ 2019년 3월 31일자로 송치호 사장, 이응규 상무, 김동수 상무, 신철호 상무 퇴임함.

#### 나. 기업가치의 훼손, 주주권의 침해에 책임이 있는 자의 임원 선임 방지 정책

당사 이사회 내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는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 규정 제3조에 의거, 공정성과 독립성을 확보하고 있으며, 이사의 직무수행 적합성에 대해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의 엄격한 심사를 거친 후 주주총회에서 최종적으로 사외이사를 선임하게 됩니다. 당사는 이사 후보에 대한 구체적인 정보 제공과 검토를 위한 충분한 시간 확보를 위하여 주주총회 3주전까지 이사선임 관련 정보를 공시하여 주주들에게 제공하고 있으며, 유가증권시장 상장규정 제77조에 의거, 사외이사 자격요건 확인서를 작성하여 한국거래소에 제출하고 있습니다.

또한 당사 (미등기)임원은 이사회 규정 제13조에 의거, 이사회의 승인을 통해 선임하고 있으며 관련 절차에 따라 적격 여부를 면밀히 검토하여 진행하고 있습니다.

#### 다. 과거 횡령, 배임 판결을 받은 자가 임원으로 선임된 적이 있는지 여부

과거 횡령, 배임 판결을 받은 자가 임원으로 선임된 사례는 없습니다.

#### 라. 집행임원제도 도입 여부

당사는 상법 제408조의2의 집행임원제도를 도입하고 있지 않습니다.

#### (핵심원칙 5) 사외이사의 책임

사외이사는 독립적으로 중요한 기업경영정책의 결정에 참여하고 이사회의 구성원으로서 경영진을 감독·지원할 수 있어야 한다.

#### (세부원칙 5-①)

사외이사는 해당 기업과 중대한 이해관계가 없어야 하며, 기업은 선임단계에서 이해관계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 가. 사외이사와 해당 기업간의 이해관계

보고서 제출일 현재 재직중인 사외이사는 과거 당사 및 계열사에 재직할 경험이 없으며, 최근 3개 사업연도 중 거래내역 또한 없습니다.

성명	과거 재직여부		최근 3개 사업년도 거래내역	
	해당기업	해당기업의 계열회사	해당기업	해당기업의 계열회사
정운오	없음	없음	없음	없음
이원우	없음	없음	없음	없음
양일수	없음	없음	없음	없음
허은녕	없음	없음	없음	없음

#### 나. 사외이사와 해당 기업간의 이해관계 확인 절차 및 내부규정 등

당사는 사외이사와 당사 사이의 이해관계 유무를 확인하기 위해, 내부회계시스템, 공시정보 및 사외이사 후보자와의 인터뷰를 통해 사실 관계를 확인하고 있습니다.

#### 다. 사외이사 재직기간

보고서 제출일 현재 기준, 당사 사외이사 중 6년을 초과하여 재직하고 있는 사외이사는 없습니다.

성명	재직기간	6년초과 장기재직 시 그 사유
정운오	5년 2개월(2014.03.14~현재)	해당 없음
이원우	2년 2개월(2017.03.17~현재)	해당 없음
양일수	2개월(2019.03.15~현재)	해당 없음
허은녕	3년 2개월(2016.03.18~현재)	해당 없음

#### 라. 사외이사와 해당 기업과의 중대한 이해관계 및 이해관계 없는 자의 선임을 위한 노력

당사는 사외이사가 당사와 중대한 이해관계가 없도록 사외이사 선임 시 사외이사 후보에 대한 자격요건(상법 제382조, 제542조의8, 공직자윤리법)을 철저히 검증하고 있습니다.

#### (세부원칙 5-②)

사외이사는 충실한 직무수행을 위하여 충분한 시간과 노력을 투입하여야 하며, 기업은 사외이사의 직무수행에 필요한 정보, 자원 등을 충분히 제공하여야 한다.

#### 가. 사외이사의 직무수행 관련 사항

당사 사외이사는 상법 시행령 제34조에 따라 해당 상장회사 외의 2개 이상의 다른 회사의 이사·집행임원·감사로 재임 할 수 없습니다. 관련한 별도의 내부 기준은 없습니다.

보고서 제출일 현재 겸직 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성명 (감사위원)	최초 선임일	임기 만료일	현직	겸직 현황			
				겸직기관	겸직업무	겸직기관 재직기간	겸직기관 상장여부
정운오 (감사위원)	2014.3.14	2017.3.17 로부터 3년	-	금호석유화학(주)	사외이사/ 감사위원	2018.3.16~ 현재	상장기업 (코스피)
이원우 (감사위원)	2017.3.17	2017.3.17 로부터 3년	서울대 법학전문대학 원 교수	(주)레이언스	사외이사/ 감사위원	사외이사(20 16.2.23~ 현재) 감사위원(20 17.3.24~ 현재)	상장기업 (코스닥)
양일수 (감사위원)	2019.3.15	2019.3.15 로부터 3년	이정지울회계 법인 파트너	이정지울 회계법인	파트너	2016.7.11~ 현재	해당 없음
허은녕	2016.3.18	2019.3.15 로부터 3년	서울대 에너지시스템 공학부 교수	해당 없음	해당 없음	해당 없음	해당 없음

이사회와 별도로 당사 사외이사들만 참여하는 회의 개최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2018.1.1~2019.6.3 기준)

회차	정기 /임시	개최 일자	출석 사외이사 /전체 사외이사	회의 사항
2018년 1차	정기	2018.1.31	3/4	1. 17년 기말감사업무 경과현황 2. 주요 감사업무 수행 현황 3. 기타사항(핵심감사사항 및 내부회계관리제도 등 개정된 외감법 주요내용)
2018년 2차	정기	2018.5.11	3/4	1. 전반 감사계획 2. 그룹감사계획에 관한 사항 3. 1분기 검토 결과 4. 핵심감사제 적용 계획 5. 독립성준수 확인

2018년 3차	정기	2018.8.24	3/4	1. 반기 검토 결과 2. K-IFRS 제1116호 도입 준비 관련 사항
2018년 4차	정기	2018.10.30	3/4	1. 3분기 검토 결과 2. K-IFRS 제1116호 도입 준비 관련 사항 3. 핵심감사 진행사항
2019년 1차	정기	2019.1.31	3/4	1. 기말 감사 경과 2. 감사인의 독립성 준수사실에 관한 사항 3. 핵심감사 진행결과
2019년 2차	정기	2019.5.10	3/4	1. 2019년 통합감사 업무계획 2. 1분기 검토 결과 3. 핵심감사사항 4. 내부회계관리제도 및 관련 법령에 대한 이해 5. 내부회계관리제도 재구축 결과 및 향후 운영 방안 등

#### 나. 사외이사가 충실한 직무수행을 위해 충분한 시간과 노력을 투입하고 있는지 여부

당사 사외이사는 타기업의 겸직을 최소화하고, 사외이사들만의 회의에도 참석하는 등 충실한 직무수행을 위해 충분한 시간과 노력을 투입하고 있습니다.

#### 다. 기업의 사외이사 직무수행 지원 정책

당사는 사외이사의 직무수행을 지원하기 위한 직무조직(이사회사무국)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사회사무국은 안건의 수집, 정리, 안건의 부의 근거 및 의결 관련 법적 검토 등의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이사회사무국 조직은 총 6명(팀장 포함)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 라. 사외이사 직무수행에 필요한 정보, 자원 제공 수준

당사는 사외이사의 충실한 직무수행을 위해, 이사회 개최 전 별도 회의 등을 통해 상정예정 안건에 관한 설명자료 등을 적시에 충분히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사외이사들이 회사와 주주의 이익에 부합하는 의사결정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핵심원칙 6) 사외이사 활동의 평가**

사외이사의 적극적인 직무수행을 유도하기 위하여 이들의 활동내용은 공정하게 평가되어야 하고, 그 결과에 따라 보수지급 및 재선임 여부가 결정되어야 한다.

**(세부원칙 6-①)**

사외이사의 평가는 개별실적에 근거하여 이루어져야 하며, 보수는 직무수행의 책임과 위험성, 투입한 시간 등을 고려하여 적절한 수준에서 결정되어야 한다.

**가. 사외이사 평가**

당사는 사외이사에 대해 해당 사외이사의 이사회 참석률, 이사회 안건에 대한 면밀한 검토와 의견을 개진하고 실효성 높은 제안을 하였는지 여부, 해당분야 전문가로서의 주요한 경영 의사결정에 적절한 자문을 제공하였는지 여부, 감사위원으로서 회사의 중요 재무적 리스크에 대한 내부통제, 감시장치 운영에 대한 기여도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평가 결과는 재선임시 근거자료로 활용이 됩니다. 당사 사외이사 평가는 이사회 활동에 대한 평가 등 정성적인 방법 및 이사회 참석률 등 정량적인 방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진행하고 있습니다.

**나. 사외이사 보수**

당사 사외이사에 대한 보수는 주주총회에서 승인 받은 총 이사보수 한도 내에서 모든 사외이사에게 동일한 금액으로 지급하고 있습니다. 당사는 사외이사에게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하지 않았으며, 2018년 사외이사 보수 지급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구 분	인원수	보수총액 (백만원)	1인당 평균보수액(백만원)
사외이사(감사위원회 위원 제외)	1	72	72
감사위원회 위원	3	216	72

**(세부원칙 6-②)**

사외이사의 평가결과는 보수 산정 및 재선임 결정 등에 반영되어야 한다.

**가. 사외이사 보수산정 및 재선임 결정 시 사외이사 평가결과 활용 여부**

사외이사 평가 결과는 사외이사 재선임 결정에 대한 근거자료로 활용됩니다. 다만, 사외이사의 처우는 동일하게 운영하고 있으므로 평가 결과에 따른 차별 적용은 하지 않고 있습니다.

**(핵심원칙 7) 이사회 운영**

이사회는 기업과 주주의 이익을 위한 최선의 경영의사를 결정할 수 있도록 효율적이고 합리적으로 운영되어야 한다.

**(세부원칙 7-①)**

이사회는 원칙적으로 정기적으로 개최되어야 하며, 이사회의 권한과 책임, 운영절차 등을 구체적으로 규정한 이사회운영규정을 마련하여야 한다.

**가. 이사회 운영 전반**

당사 이사회는 분기 1회 개최를 원칙으로 하되, 필요 시 수시로 개최하고 있습니다. 매 이사회는 이사회 규정 제9조에 의거, 의장 또는 이사회가 별도로 정하는 이사가 소집하며, 이사회 규정 제10조에 의거, 회일을 정하고 적어도 12시간 전에 각 이사에게 서면, 구두 또는 전자문서로 통고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사 전원의 동의를 있을 때에는 이러한 소집절차를 생략할 수 있습니다. 당사는 해당 사업연도의 이사회 일정 및 안건에 관한 사항을 이사들에게 사전 안내하여 이사회 참석률을 높이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또한 상정 예정인 이사회 안건에 대해 이사들이 충분히 숙의할 수 있도록 본 이사회 개최 수일 전에 사전보고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매 이사회에 관하여 의사록을 작성하고 있으며, 의사록에는 안건 및 그 결과를 기재하고 출석한 이사가 서명하고 있습니다. 이사회 운영 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2018.1.1~2019.6.3 기준)

회차	정기/임시	개최 일자	안건 통지 일자	출석/정원	안건		가결 여부
					구분	내용	
2018년 1차	정기	2018. 1.31	2018. 1.25	7/7	결의	제1호: 제65기 재무제표 및 영업보고서 승인 제2호: 2018년 이사등의 자기거래 승인	가결 가결
					보고	제1호: 미국 Rosemont 동광산 투자경과 보고 제2호: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실태 보고	보고
2018년 2차	정기	2018. 2.23	2018. 2.20	7/7	결의	제1호: 인니 신규 팜 농장 인수 및 투자 승인 제2호: 대규모 내부거래 승인 제3호: 제65기 주주총회 소집 승인 제4호: 제65기 주주총회 상정안건 승인	가결 가결 가결 가결
					보고	제1호: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실태 평가 보고 제2호: 준법통제체제 운영실태 보고	보고
2018년 3차	정기	2018. 3.16	2018. 3.13	7/7	결의	제1호: 이사회 의장 선임 제2호: 대표이사 선임 제3호: 이사 보수 집행 승인 제4호: 집행임원 인사관리 규정 개정 승인	가결 가결 가결 가결

						제5호: 집행임원 특별상여금 집행 승인 제6호: 상근 자문역 위촉 승인	가결 가결
2018년 4 차	정기	2018. 5.11	2018. 5.9	7/7	결의	제1호: 해외법인 Credit Line 지급보증 승인 제2호: 준법지원인 선임	가결 가결
					보고	제1호: 2018년 1/4분기 경영실적 보고	보고
2018년 5 차	정기	2018. 8.29	2018. 8.23	6/7	보고	제1호: 2018년 상반기 경영실적 보고	보고
2018년 6 차	정기	2018. 10.30	2018. 10.26	7/7	보고	제1호: 2018년 3/4분기 경영실적 보고	보고
2018년 7 차	정기	2018. 11.27	2018. 11.23	6/7	결의	제1호: 남미 석유 투자법인 지분매각 승인 제2호: 2019년 사업계획 승인 제3호: 2019년 특수관계인과의 거래총액한도 승인 제4호: 2019년 LG상표 사용 계약 체결 승인 제5호: 2019년 이사 등의 자기거래 승인 제6호: 감사위원회 규정 개정 승인 제7호: 집행임원 인사 승인	가결 가결 가결 가결 가결 가결 가결
2019년 1 차	정기	2019. 1.31	2019. 1.29	6/7	결의	제1호: 제66기 재무제표 및 영업보고서 승인 제2호: 내부회계관리규정 개정 승인 제3호: 사외이사 후보추천위원회 위원 선임 제4호: 본점 소재지 이전 승인 제5호: 임대차 계약 체결 승인	가결 가결 가결 가결 가결
					보고	제1호: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실태 보고 제2호: 집행임원 징계 보고	보고
2019년 2 차	정기	2019. 2.22	2019. 2.19	6/7	결의	제1호: 제66기 주주총회 소집 승인 제2호: 제66기 주주총회 회의목적 사항 승인	가결 가결
					보고	제1호: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실태 평가 보고 제2호: 준법통제체제 운영실태 보고	보고
2019년 3차	정기	2019. 3.15	2019. 3.13	7/7	결의	제1호: 이사회 의장 선임 제2호: 대표이사 선임 제3호: 이사 보수 집행 승인 제4호: 집행임원 인사관리 규정 개정 승인 제5호: 집행임원 특별상여금 집행 승인 제6호: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 규정 개정 승인 제7호: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 위원 선임	가결 가결 가결 가결 가결 가결 가결



						제8호: 고문 위촉 승인 제9호: 부동산 매매계약 체결 승인 제10호: 이사 등의 자기거래 승인	가결 가결 가결
2019년 4차	임시	2019. 4.22	2019. 4.17	7/7	결의	제1호: 미국 Rosemont 동광산 지분 매각 승인	가결
2019년 5차	정기	2019. 5.10	2019. 5.7	7/7	결의	제1호: 인니 동부 칼리만탄 유연탄광 투자 승인 제2호: 해외법인 Credit Line 지급보증 승인	가결 가결
					보고	제1호: 2019년 1/4분기 경영실적 보고	보고

#### 나. 이사회 정기적 개최 여부, 이사회 운영규정 마련 여부

당사는 정기적으로 분기1회 이상 이사회를 개최하고 있으며, 이사회 규정을 마련하여 준수하고 있습니다.

**(세부원칙 7-②)**  
 이사회는 매 회의마다 의사록을 상세하게 작성하고, 개별이사의 이사회 출석률과 안건에 대한 찬반여부 등 활동내역을 공개하여야 한다.

#### 가. 이사회 의사록, 녹취록 작성 및 보존 여부

당사는 이사회 개최시, 의사록을 작성하여 보존하고 있습니다. 녹취록은 별도로 작성·보존하지 않습니다.

#### 나. 개별이사의 이사회 출석내역

당사 개별이사의 이사회 출석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2018.1.1~2018.12.31 기준)

구분	회차	1차	2차	3차	4차	5차	6차	7차
	개최일자	2018. 1.31	2018. 2.23	2018. 3.16	2018. 5.11	2018. 8.29	2018. 10.30	2018. 11.27
사내	송치호	참석	참석	참석	참석	참석	참석	불참
	박용환	참석	참석	참석	참석	참석	참석	참석
사외	정운오	참석	참석	참석	참석	참석	참석	참석
	김동욱	참석	참석	참석	참석	참석	참석	참석
	이원우	참석	참석	참석	참석	참석	참석	참석

	허은녕	참석	참석	참석	참석	참석	참석	참석
기타 비상무	하현희	참석	참석	참석	참석	불참	참석	참석

(2019.1.1~2019.6.3 기준)

구분	회차	1차	2차	3차	4차	5차
	개최일자	2019. 1.31	2019. 2.22	2019. 3.15	2019. 4.22	2019. 5.10
사내	송치호	불참	불참	사임	사임	사임
	박용환	참석	참석	사임	사임	사임
	윤춘성	미선임	미선임	참석	참석	참석
	민병일	미선임	미선임	참석	참석	참석
사외	정운오	참석	참석	참석	참석	참석
	김동욱	참석	참석	사임	사임	사임
	이원우	참석	참석	참석	참석	참석
	허은녕	참석	참석	참석	참석	참석
	양일수	미선임	미선임	참석	참석	참석
기타 비상무	하현희	참석	참석	사임	사임	사임
	이재원	미선임	미선임	참석	참석	참석

#### 다. 최근 3개 사업연도별 안건 찬성률

최근 3개 사업연도 당사 이사 출석률 및 찬성률은 다음과 같습니다.

(2016.1.1~2018.12.31 기준)

성명	구분	재직 기간 <sup>1)</sup>	출석률(%) <sup>2)</sup>			찬성률(%) <sup>3)</sup>				
			재직 평균	최근 3개년			재직 평균	최근 3개년		
				2018	2017	2016		2018	2017	2016
송치호	사내	2014.3.14~ 2019.3.15	95.2	85.7	100	100	100	100	100	
허성		2009.3.20~ 016.3.18	100	-	-	100	100	-	-	100

박용환		2016.3.18~ 2019.3.15	100	100	100	100	100	100	100	100
정운오	사외	2014.3.14~ 현재	100	100	100	100	100	100	100	100
김동욱		2013.3.15~ 2019.3.15	100	100	100	100	100	100	100	100
한민		2011.3.11~ 2017.3.17	100	-	100	100	100	-	100	100
허은녕		2016.3.18~ 현재	100	100	100	100	100	100	100	100
이원우		2017.3.17~ 현재	91.7	100	80	-	100	100	100	-
하현희	기타 비상무	2015.3.13~ 2019.3.15	95.2	85.7	100	100	100	100	100	100

- 1) 재직기간은 이사회 구성원으로서의 재직 기간 기재
- 2) 최근 3개년 중 해당 이사의 재직기간에 포함되지 않는 연도는 “-”으로 표시
- 3) 찬성률 계산 시, 이사회 불참 및 의결권 불행사한 안건은 제외

#### 라. 주요 토의내용과 결의사항을 개별 이사 별로 기록하는지 여부

당사는 이사회 토의내용 및 결의사항을 종합적으로 정리하여 의사록을 작성하고 있습니다. 개별 이사 별로 별도의 기록은 하고 있지 않습니다.

**(핵심원칙 8) 이사회 내 위원회**  
 이사회는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그 내부에 특정 기능과 역할을 수행하는 위원회를 설치하여야 한다.

**(세부원칙 8-①)**  
 이사회 내 위원회는 과반수를 사외이사로 구성하되 감사위원회와 보상(보수)위원회는 전원 사외이사로 구성하여야 한다.

#### 가. 이사회 내 위원회의 설치현황, 주요 역할, 구성 현황

자세한 내용은 본 보고서 ‘세부원칙 4-①’을 참조 바랍니다.

#### 나. 이사회 내 위원회의 과반수를 사외이사로 구성하였는지 여부

당사 감사위원회는 전원 사외이사로 구성되어 있으며,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는 3인 중 2인이 사외이사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세부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위원회	구성		
	직책	구분	성명
감사위원회	위원장	사외이사	정운오
	위원	사외이사	이원우
	위원	사외이사	양일수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	위원	기타비상무이사	이재원
	위원	사외이사	양일수
	위원	사외이사	허은녕

**(세부원칙 8-②)**

모든 위원회의 조직, 운영 및 권한에 대하여는 명문으로 규정하여야 하며, 위원회는 결의한 사항을 이사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가. 이사회 내 위원회 전반 및 명문 규정 여부**

당사 이사회 내 위원회에는 감사위원회와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가 있습니다. 각 위원회에는 각 위원회에 관하여 명문으로 감사위원회 규정과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각 위원회의 전반적인 사항은 하기와 같습니다.

**(1) 감사위원회**

구분	내용
설치목적	- 회사의 업무·회계 감사
권한	- 회사의 업무와 재산 상태 조사, 임시주주총회의 소집 청구 등
책임	- 관련 법령, 정관 및 감사위원회 규정 등의 준수
활동 및 성과평가	- '세부원칙 9-②'을 참조
구성 및 자격·임면	- 주주총회에서 선임 - 위원회는 3인 이상의 이사로 구성하고 감사위원의 3분의 2 이상은 사외이사로 구성 - 감사위원 중 1인 이상은 상법 제 542 조의 11 제 2 항에서 정하는 회계 또는 재무전문가로 구성 등

**(2)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

구분	내용
설치목적	- 사외이사후보의 추천
권한	- 사외이사후보의 추천

책임	- 관련 법령 및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 규정 등의 준수
활동 및 성과평가	- '다. 위원회별 회의 개최 내역' 참조
구성 및 자격·임면	- 이사회에서 선임 - 2인 이상의 이사로 구성하며, 위원의 과반수는 사외이사로 구성

#### 나. 위원회 결의사항의 이사회 보고 여부

감사위원회는 이사회 규정 제6조 및 감사위원회 규정 제12조에 의거, 다음 사항을 이사회에 보고합니다.

- ① 이사회에서 감사위원회에 위임한 사항의 처리결과
- ② 이사가 법령 또는 정관에 위반한 행위를 하거나 그 행위를 할 염려가 있는 경우 이에 관한 사항
- ③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실태 평가결과 및 동제도의 관리나 운영에 대한 시정 의견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는 사외이사 후보를 추천하여, 이사회에 주주총회 상정 안건으로 부의를 합니다.

#### 다. 위원회별 회의 개최 내역

당사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의 개최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감사위원회의 경우 작성 가이드라인에 따라, '세부원칙 9-①'을 참조 바랍니다.

(2018.1.1~2019.6.3 기준)

회차	개최일자	출석/정원	안건		가결여부
			구분	내용	
2019년 1차	2019.2.22	3/3	결의 사항	제1호: 사외이사 후보추천위원회 위원장 선임 제2호: 사외이사 후보 추천 승인	가결 가결

#### 라. 개별이사의 출석률

당사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의 개별이사의 출석률은 다음과 같습니다.

감사위원회의 경우 작성 가이드라인에 따라, 세부원칙 9-①을 참조 바랍니다.

(2016.1.1~2018.12.31 기준)

구분	성명	재직 기간	출석률(%) <sup>1)</sup>			
			재직평균	최근 3개년		
				2018 <sup>2)</sup>	2017	2016
기타비상무	하현희	2015.3.13~2019.3.15	100	-	100	100
사외	정운오	2014.3.14~현재	100	-	-	100

	한민	2011.3.11~2017.3.17	100	-	-	100
	김동욱	2013.3.15~2019.3.15	100	-	100	-
	허은녕	2016.3.18~현재	100	-	100	-

- 1) 최근 3개년 중 해당 이사의 재직기간에 포함되지 않는 연도는 “-”으로 표시  
 2) 2018 사업연도의 경우에는 주주총회에서 사외이사 선임안건이 상정되지 않아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 미개최

#### 4. 감사기구

##### (핵심원칙 9) 내부감사기구

내부감사기구는 경영진 및 지배주주로부터 독립적인 입장에서 성실하게 감사업무를 수행하여야 하며, 내부감사기구의 주요 활동내역은 공시되어야 한다.

##### (세부원칙 9-①)

내부감사기구는 독립성과 전문성을 확보하여야 한다.

##### 가. 감사위원회 현황 및 독립성, 전문성 확보를 위한 정책 여부

보고서 제출일 현재, 당사 감사위원회는 독립성이 검증된 사외이사로 구성되어 있으며 구성원의 경력 및 자격과 회계·재무 전문가 여부는 다음과 같습니다.

구성			감사업무 관련 경력 및 자격	회계·재무 전문가 여부
직책	구분	성명		
위원장	사외 이사	정운오	서울대 국제경제학 학사 美)코넬대院 경영학 석사 美)UCLA院 회계학 박사 前 한국세무학회 회장('10년~'11년) 前 서울대 경영대 교수	회계·재무 전문가
위원		양일수	연세대(院) 경영학 학사 / 석사 홍익대(院) 경영학 박사 前 삼일회계법인 전무 現 이정지유희회계법인 파트너	회계·재무 전문가
위원		이원우	서울대(院) 법학 학사 / 석사 獨)함부르크대 공법 박사 한림대 사회과학대 법학부 조교수 한양대 법과대 법학과 부교수 서울대 법과대학장 겸 법학전문대	-

			학원장 現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	--	--	-------------------------	--

## 나. 감사위원회 운영 관련

### (1) 감사위원회 규정 여부

당사는 감사위원회 규정을 수립하여 준수하고 있습니다. 감사위원회 규정 제3조에 의거, 감사위원회는 회사의 회계와 업무를 감사하며, 이를 위하여 언제든지 이사에 대하여 영업에 관한 보고를 요구하거나 회사의 업무와 재산 상태를 조사할 수 있습니다. 동 규정 제11조에서 정한 감사위원회 부의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감사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
2. 감사에 관한 사항
  - 상법 제412조의2 소정의 이사의 보고에 따른 조치
  - 주식회사 외부감사에 따른 법률 제10조 소정의 감사인의 통보에 따른 조치
  - 자회사의 조사에 관한 사항
  - 이사의 위법행위에 대한 유지청구
  - 업무·재산 조사
  - 이사와 회사간의 소에 관한 대표
  - 소수주주의 이사에 대한 제소 요청시 소 제기 결정 여부
  - 회사 재무제표의 검토
  - 중요한 회계처리기준 또는 회계추정의 변경시 적정성 및 타당성 검토
  -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실태 평가
  - 내부감시장치의 가동현황에 대한 평가
  - 이사회 소집청구
  - 내부회계관리규정의 제정 또는 개정
3. 다른 감사부문에 관한 사항
  - 감사인 선임 및 해임의 승인
  - 감사인 선정을 위한 검토
  - 감사인의 선정 및 변경·해임 요청
4. 주주총회에 관한 사항
  - 감사보고서의 작성, 제출 및 주주총회에서의 의견 진술에 관한 사항
  - 임시주주총회의 소집청구
5. 기타 법령에 정하거나 정관 및 이사회가 위임한 사항 및 이의 처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 (2) 교육제공 및 자문 지원 여부

감사위원 교육제공 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회차	개최 일자	대상	교육 사항
2018년 1차	2018.1.31	감사위원 3인	1. 17년 기말감사업무 경과현황 2. 주요 감사업무 수행 현황 3. 기타사항(핵심감사사항 및 내부회계관리제도 등 개정된 외감법 주요내용)
2018년 2차	2018.5.11	감사위원 3인	1. 전반 감사계획 2. 그룹감사계획에 관한 사항 3. 1분기 검토 결과 4. 핵심감사제 적용 계획 5. 독립성준수 확인
2018년 3차	2018.8.24	감사위원 3인	1. 반기 검토 결과 2. K-IFRS 제1116호 도입 준비 관련 사항
2018년 4차	2018.10.30	감사위원 3인	1. 3분기 검토 결과 2. K-IFRS 제1116호 도입 준비 관련 사항 3. 핵심감사 진행사항
2019년 1차	2019.1.31	감사위원 3인	1. 기말 감사 경과 2. 감사인의 독립성 준수사실에 관한 사항 3. 핵심감사 진행결과
2019년 2차	2019.5.10	감사위원 3인	1. 2019년 통합감사 업무계획 2. 1분기 검토 결과 3. 핵심감사사항 4. 내부회계관리제도 및 관련 법령에 대한 이해 5. 내부회계관리제도 재구축 결과 및 향후 운영 방안 등

감사위원 및 내부회계관리제도와 관련된 업무를 수행하는 자의 교육 계획은 다음과 같습니다.

- 교육대상 : 감사위원회, 대표이사, 내부회계관리자, 내부회계전담부서, 감사위원회지원부서, 담당임직원
- 교육내용 : 내부회계관리제도 및 관련 법령에 대한 이해
- 교육횟수 : 연 1~2회
- 교육기관 : 회계법인 등 외부전문기관, 내부회계전담부서

(3) 경영진의 부정행위 조사 절차 및 경영진의 감사위원회에 대한 정보,비용 지원 여부

감사위원회는 외부감사인으로부터 회사의 회계처리기준 위반사실을 통보 받을 경우 회사의 비용으로 외



부전문가를 선임하여 위반사실 등을 조사하고 그 조사 내용에 대한 정보를 제공 받으며, 조사 결과에 따라 회사의 대표자에게 시정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감사위원회는 회사의 회계와 업무 감사를 위하여 언제든지 이사에 대하여 영업에 관한 보고를 요구하거나 회사의 업무와 재산 상태를 조사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 관계임직원 및 외부감사인을 회의에 참석하도록 요구할 수 있는 등 충분한 정보를 제공받을 권한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한 감사위원회는 감사위원회 규정 제21조에 따라 회사의 비용으로 전문가의 조력을 구할 수 있습니다.

**(4) 감사위원회 지원 조직 설치 현황**

당사는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실태 평가, 내부감시장치의 가동현황에 대한 효과적인 점검수행을 지원하기 위하여 감사위원회지원Part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5) 감사위원회의 경영정보 접근성 정도**

당사 감사위원회 규정 제3조에 의거, 감사위원회는 회사의 회계와 업무를 감사하며, 이를 위하여 언제든지 이사에 대하여 영업에 관한 보고를 요구하거나 회사의 업무와 재산 상태를 조사할 수 있습니다.

**다. 감사위원 보수 정책**

당사 감사위원은 전원 사외이사이며, 사외이사에 대해 단일한 보수정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감사위원인 사외이사와 감사위원이 아닌 사외이사 간의 보수 차이가 없습니다.

**라. 내부감사기구의 독립성과 전문성 확보 여부**

당사 감사위원회는 상기 '가. 감사위원회 현황 및 독립성, 전문성 확보를 위한 정책 여부'에서 확인 할 수 있는 바와 같이, 사외이사의 경력과 위원회 구성 면에서 독립성과 전문성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세부원칙 9-②)**  
**내부감사기구는 정기적 회의 개최 등 감사 관련 업무를 성실하게 수행하고 활동 내역을 투명하게 공개해야 한다.**

**가. 감사위원회 활동 내역**

**(1) 감사위원회 개최 내역**

(2018.1.1~2019.6.3 기준)

회차	개최일자	출석/정원	안건		가결 여부
			구분	내용	
2018년 1차	2018.1.31	3/3	보고 사항	제1호: 제65기 재무제표 및 영업보고서 보고 제2호: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실태 보고 제3호: 2017년 하반기 주요 경영진단 결과 및 2018년 계획 보고	보고

2018년 2차	2018.2.23	3/3	승인 사항	제1호: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실태 평가 승인 제2호: 내부감시장치 운영실태 평가 승인 제3호: 감사보고서 제출 승인	가결 가결 가결
2018년 3차	2018.5.11	3/3	보고 사항	제1호: 2018년 1/4분기 재무제표 보고 제2호: 2017년 외부감사인의 감사활동에 대한 평가 보고	보고
2018년 4차	2018.8.29	3/3	보고 사항	제1호: 2018년 상반기 재무제표 보고 제2호: 2018년 상반기 주요 경영진단 결과 보고	보고
2018년 5차	2018.10.30	3/3	보고 사항	제1호: 2018년 3/4분기 재무제표 보고	보고
			승인 사항	제1호: 감사위원회 지침 제정 승인	가결
2018년 6차	2018.11.27	3/3	승인 사항	제1호: 외부감사인 후보 평가 제2호: 외부감사인 선정	가결 가결
2019년 1차	2019.1.31	3/3	보고 사항	제1호: 제66기 재무제표 및 영업보고서 보고 제2호: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실태 보고 제3호: 2018년 하반기 주요 경영진단 실행성과 및 2019년 계획 보고	보고
			승인 사항	제1호: 내부회계관리규정 개정 승인	가결
2019년 2차	2019.2.22	3/3	승인 사항	제1호: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실태 평가 승인 제2호: 내부감시장치 운영실태 평가 승인 제3호: 감사보고서 승인	가결 가결 가결
2019년 3차	2019.5.10	3/3	보고 사항	제1호: 2019년 1/4분기 재무제표 보고 제2호: 2018년 외부감사인의 감사활동에 대한 평가 보고	보고

## (2) 외부감사인 선임 내역

당사는 2018년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개정에 부합하도록 감사위원회 규정 개정을 하였으며, 이를 통해 감사위원회가 감사인 선정을 위한 검토, 감사인 선정 및 변경·해임요청 권한 등을 보유하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감사인 후보 평가 기준 및 절차 지침의 신규 제정을 통해 독립성과 적격한 전문성을 갖춘 외부감사인을 선정하기 위한 내부 규정을 마련하였습니다. 새로운 법령과 규정에 따라 2019년~2021년 3개 회계연도 외부감사인 선임 시 감사위원회는 제안서 수취, 대면회의 등을 통해 외부감사인 평가 등의 과정을 거쳤으며, 2018년 11월 한영회계법인을 당사 외부감사인으로 선정하였습니다.

(3)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실태 평가 실시 내역

2018.2.23일에 감사위원회가 내부회계관리제도의 운영실태를 평가하여 이사회에 보고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본 감사위원회는 2017년 12월 31일자로 종료하는 회계연도에 대한 당사 내부회계관리제도의 설계 및 운영실태를 평가하였습니다. 내부회계관리제도의 설계 및 운영에 대한 책임은 내부회계관리자를 포함한 회사의 경영진에 있습니다. 본 감사위원회는 내부회계관리자가 본 감사위원회에 제출한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실태 평가보고서를 참고로, 회사의 내부회계관리제도가 신뢰할 수 있는 재무제표의 작성 및 공시를 위하여 재무제표의 왜곡을 초래할 수 있는 오류나 부정행위를 예방하고 적발할 수 있도록 효과적으로 설계 및 운영되고 있는지의 여부에 대하여 평가하였습니다. 본 감사위원회는 내부회계관리제도의 설계 및 운영실태를 평가함에 있어서 내부회계관리제도 모범규준을 평가기준으로 사용하였습니다. 본 감사위원회의 의견으로는, 2017년 12월 31일 현재 당사 내부회계관리제도는 내부회계관리제도 모범규준에 근거하여 볼 때 중요성의 관점에서 효과적으로 설계되어 운영되고 있다고 판단됩니다.

2019.2.22일에 감사위원회가 내부회계관리제도의 운영실태를 평가하여 이사회에 보고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본 감사위원회는 2018년 12월 31일자로 종료하는 회계연도에 대한 당사 내부회계관리제도의 설계 및 운영실태를 평가하였습니다. 내부회계관리제도의 설계 및 운영에 대한 책임은 대표이사 및 내부회계관리자를 포함한 회사의 경영진에 있습니다. 본 감사위원회는 대표이사 및 내부회계관리자가 본 감사위원회에 제출한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실태보고서를 참고로, 회사의 내부회계관리제도가 신뢰할 수 있는 재무제표의 작성 및 공시를 위하여 재무제표의 왜곡을 초래할 수 있는 오류나 부정행위를 예방하고 적발할 수 있도록 효과적으로 설계 및 운영되고 있는지의 여부에 대하여 평가하였으며, 내부회계관리제도가 신뢰성 있는 회계정보의 작성 및 공시에 실질적으로 기여하는지를 평가하였습니다. 또한 본 감사위원회는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실태보고서에 거짓으로 기재되거나 표시된 사항이 있거나, 기재하거나 표시하여야 할 사항을 빠뜨리고 있는지를 점검하였으며,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실태보고서의 시정 계획이 회사의 내부회계관리제도 개선에 실질적으로 기여할 수 있는지를 검토하였습니다. 본 감사위원회는 내부회계관리제도의 설계 및 운영실태를 평가함에 있어 내부회계관리제도모범규준을 평가기준으로 사용하였습니다. 본 감사위원회의 의견으로는, 2018년 12월 31일 현재 당사 내부회계관리제도는 내부회계관리제도 모범규준에 근거하여 볼 때 중요성의 관점에서 효과적으로 설계되어 운영되고 있다고 판단됩니다.

나. 개별이사 출석내역

감사위원회 위원 개별이사의 출석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2018.1.1~2018.12.31 기준)

구분	회차	2018년 1차	2018년 2차	2018년 3차	2018년 4차	2018년 5차	2018년 6차
	개최일자	2018.1.31	2018.2.23	2018.5.11	2018.8.29	2018.10.30	2018.11.27
사외	정운오	출석	출석	출석	출석	출석	출석
	김동욱	출석	출석	출석	출석	출석	출석
	이원우	출석	출석	출석	출석	출석	출석

(2019.1.1~2019.6.3 기준)

구분	회차	2019년 1차	2019년 2차	2019년 3차
	개최일자	2019.1.31	2019.2.22	2019.5.10
사외	정운오	출석	출석	출석
	김동욱	출석	출석	사임
	이원우	출석	출석	출석
	양일수	미선임	미선임	출석

#### 다. 최근 3 사업연도 별 개별이사 출석률

최근 3사업연도 기간 동안 감사위원회 위원 개별이사의 출석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구분	성명	재직 기간	출석률(%) <sup>1)</sup>			
			재직평균	최근 3개년		
				2018	2017	2016
사외	정운오	2014.3.14~현재	100	100	100	100
	김동욱	2013.3.15~2019.3.15	100	100	100	100
	한민	2011.3.11~2017.3.17	100	-	100	100
	이원우	2017.3.17~현재	88.9 <sup>2)</sup>	100	66.7	-

1) 최근 3개년 중 해당 이사의 재직기간에 포함되지 않는 연도는 “-”으로 표시

2) 2017~2019사업연도 기간 동안 총 9회의 감사위원회 중 8회 출석

#### 라. 감사위원회 운영 관련 내부규정 여부 및 업무를 충실히 수행하는지 여부

당사는 감사위원회 운영 관련 감사위원회 규정을 마련하여 준수하고 있으며, 리스크 관리 등 내부통제 및 감독 업무 등을 충실히 수행하고 있습니다.

**(핵심원칙 10) 외부감사인**

기업의 회계정보가 주주 등 그 이용자들로부터 신뢰를 받을 수 있도록 외부감사인은 감사대상기업과 그 경영진 및 지배주주 등으로부터 독립적인 입장에서 공정하게 감사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세부원칙 10-①)**

내부감사기구는 외부감사인 선임시 독립성, 전문성을 확보하기 위한 정책을 마련하여 운영하여야 한다.

**가. 외부감사인 선임 관련 기준, 절차**

당사는 2016년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과 감사위원회 규정에 따라 2016년~2018년 3개 회계연도의 외부감사인을 선임하였습니다. 감사인 선임 시, 감사위원회는 감사위원회 모범 운영사례에 근거하여 외부감사인의 독립성, 당사의 동종업계에 대한 감사경험, 감사인력에 대한 전문성 및 경험 등에 대해 보고받았으며, 2016년 2월 감사위원회에서 당사 외부감사인으로 한영회계법인을 선임하는 것을 승인하였습니다. 당사는 2018년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개정에 부합하도록 감사위원회 규정 개정을 하였으며, 이를 통해 감사위원회가 감사인 선정을 위한 검토, 감사인 선정 및 변경·해임요청 권한 등을 보유하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감사인 후보 평가 기준 및 절차 지침의 신규 제정을 통해 독립성과 적극적인 전문성을 갖춘 외부감사인을 선정하기 위한 내부 규정을 마련하였습니다. 새로운 법령과 규정에 따라 2019년~2021년 3개 회계연도 외부감사인 선임 시 감사위원회는 제안서 수취, 대면회의 등을 통해 외부감사인 평가 등의 과정을 거쳤으며, 2018년 11월 한영회계법인을 당사 외부감사인으로 선정하였습니다.

**나. 외부감사인 선임 관련 회의개최 횟수 및 논의사항**

2018년 11월 27일 당사 감사위원회는 감사위원회를 개최하여 2019년~2021년 3개 회계연도 외부감사인 후보 평가 및 외부감사인 선정을 하였습니다. 여기에서 감사인 후보자가 감사시간, 감사보수, 감사인력 및 감사계획을 구체적으로 보고하였습니다. 감사위원들은 감사시간, 감사보수, 감사인력, 감사계획 및 감사인으로서의 독립성과 전문성 등에 대하여 후보자에게 구체적으로 질의하고, 후보자는 각 질문에 답변하며 세부자료를 제공하는 등의 방법으로 감사위원들의 질의에 상세히 답변하였습니다. 또한, 감사위원들은 전기 감사인이 감사인 선임시 합의한 감사시간, 감사보수, 감사인력 및 감사계획을 충실히 이행하였는지 여부, 감사업무에 관하여 회사에 회계처리기준 해석, 자산 가치평가 등에 대한 자문을 외부기관에 할 것을 요구한 이력 및 그 요구 내용에 대한 감사위원회와 전기감사인 간의 협의 내용, 자문 결과 및 그 활용 내용, 해당 사업연도의 감사위원회와 전기감사인 간의 대면회의 횟수, 참석자 인적사항, 주요 발언 내용 및 기타 감사인선정의 객관성 및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한 사항들에 대하여 검토하였습니다.

**다. 외부감사인 평가여부 및 내용**

2018년 회계연도에 대한 외부감사인의 감사업무 수행에 대해 2019년 회사와 감사위원회는 각각 사후평가를 실시하였습니다. 회사와 감사위원회는 외부감사인의 독립성 및 적격성에 대한 평가, 계획된 일정대로 수행되었는지 여부, 계획된 감사시간/인력과 실제 투입된 감사시간/인력에 대한 검토, 감사 품질에 대한 사항 및 회사 등과의 충실한 의사소통에 대해 평가하였습니다.

**라. 비감사용역을 제공받고 있는지 여부**

당사는 감사인의 독립성 확보를 위해 모든 비감사 업무에 대한 사전검토를 통해 공인회계사법 등에서 규정한 금지업무는 다른 회계법인을 활용토록 하고 있습니다. 당사 외부감사인인 한영회계법인이 2018년 회계연도 중 수행한 비감사 업무 내용 및 보수는 다음과 같습니다.

사업연도	계약체결일	용역내용	용역수행기간	용역보수 (백만원)
2018년도	2018년 3월	사채관리계약 준수여부 확인 용역	20일	2
	2018년 12월	이전가격 컨설팅 용역	3개월	30

#### 마. 외부감사인 선임시 독립성, 전문성을 확보하기 위한 정책 마련 여부

당사는 법령에 부합하는 내부 규정 및 지침을 마련하였고 이에 따라, 외부감사인을 선정, 사전/사후 평가 등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외부감사인의 독립성 및 전문성을 확보하기 위한 충분한 정책과 절차가 운영되고 있다고 판단됩니다.

#### (세부원칙 10-②)

내부감사기구는 외부감사 실시 및 감사결과 보고 등 모든 단계에서 외부감사인과 주기적으로 의사소통하여야 한다.

#### 가. 경영진 참석 없이 분기별 1회 이상 외부감사 관련 사항 협의 여부

감사위원회는 경영진의 참석 없이 분기별 1회 이상 외부감사인과 정기적으로 소통하고 있습니다.

#### 나. 주요 협의 내용 및 내부감사업무에의 반영 절차

회차	방식	개최 일자	참석자	회의 사항
2018년 1차	대면회의	2018.1.31	감사위원 및 외부감사인	1. 17년 기말감사업무 경과현황 2. 주요 감사업무 수행 현황 3. 기타사항(핵심감사사항 및 내부회계관리제도 등 개정된 외감법 주요내용)
2018년 2차	대면회의	2018.5.11	감사위원 및 외부감사인	1. 전반 감사계획 2. 그룹감사계획에 관한 사항 3. 1분기 검토 결과 4. 핵심감사제 적용 계획 5. 독립성준수 확인
2018년 3차	대면회의	2018.8.24	감사위원 및 외부감사인	1. 반기 검토 결과 2. K-IFRS 제1116호 도입 준비 관련 사항

2018년 4차	대면회의	2018.10.30	감사위원 및 외부감사인	1. 3분기 검토 결과 2. K-IFRS 제1116호 도입 준비 관련 사항 3. 핵심감사 진행사항
2019년 1차	대면회의	2019.1.31	감사위원 및 외부감사인	1. 기말 감사 경과 2. 감사인의 독립성 준수사실에 관한 사항 3. 핵심감사 진행결과
2019년 2차	대면회의	2019.5.10	감사위원 및 외부감사인	1. 2019년 통합감사 업무계획 2. 1분기 검토 결과 3. 핵심감사사항

#### 다. 외부감사인의 감사위원회向 통보 절차 및 감사위원회의 역할 및 책임

당사 감사위원회는 외부감사인으로부터 연간 감사수행 일정 및 감사범위, 독립성 관리에 대한 내용, 경영진과의 의견불일치 사항 존재 여부, 핵심 감사사항 등에 대해 매 분기마다 상호 Communication하고 있습니다. 감사위원회는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대한 법률 제 22조와 감사위원회 규정에 따라 부정 행위 등을 감사인으로부터 통보 받은 경우 외부전문가를 선임하여 조사할 수 있으며, 대표이사에게 시정 요구를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조사 결과 및 시정 조치를 증권선물위원회와 감사인에게 제출할 책임을 가지고 있습니다.

### 5. 기타 주요 사항 [필요시]

#### 가. 지속가능경영보고서

당사는 주주, 고객 및 지역사회를 포함한 대내외 이해관계자들의 요구에 보다 적극적으로 부응함으로써 사회적 책임을 다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지배구조, 기업윤리, 안전환경 등을 포함한 지속가능경영보고서를 매년 발간하고 있으며 이는 당사의 홈페이지에서 국문 및 영문으로 열람할 수 있습니다.

※ LG상사 지속가능경영보고서: [http://www.lgicorp.com/company/sustainability\\_report](http://www.lgicorp.com/company/sustainability_report)

#### 나. LG윤리규범

당사는 LG윤리규범에 따라, '고객을 위한 가치창조'와 '인간존중의 경영'을 경영이념으로 공유하고, 경영현장의 정신에 따라 자율과 책임에 기초한 자율경영을 도모하고 있으며, 자유롭고 공정한 경쟁을 지향하는 자유시장경제 질서를 존중하고, 상호신뢰와 협력을 토대로 모든 이해관계자와 공동의 이익을 추구함으로써 세계적인 초우량 기업으로 영속 발전하고자 합니다. 특히 LG윤리규범에는 국가와 사회에 대한 책임을 규정하고 있으며, 당사는 합리적인 사업전개를 통해 건실한 기업으로 성장함으로써 주주의 이익을 보호하고 국민의 풍요로운 삶과 사회발전에 공헌하고자 합니다. 세부내용은 당사 홈페이지를 참조 부

탁 드립니다.

※ LG윤리규범: [http://www.lgicorp.com/company/practice\\_guideline](http://www.lgicorp.com/company/practice_guideline)



**첨부**

**기업지배구조 핵심지표 준수 현황 (필수 기재)**

구분	핵심 지표	준수여부	
		○	X
주 주	① 주주총회 4 주 전에 소집공고 실시*		X
	② 전자투표 실시*		X
	③ 주주총회의 집중일 이외 개최*	○	
	④ 배당정책 및 배당실시 계획을 연 1 회 이상 주주에게 통지**		X
이사회	⑤ 최고경영자 승계정책(비상시 선임정책 포함) 마련 및 운영	○	
	⑥ 내부통제정책 마련 및 운영	○	
	⑦ 이사회 의장과 대표이사 분리		X
	⑧ 집중투표제 채택		X
	⑨ 기업가치 훼손 또는 주주권익 침해에 책임이 있는 자의 임원 선임을 방지하기 위한 정책 수립 여부	○	
	⑩ 6 년 초과 장기재직 사외이사 부존재	○	
감사기구	⑪ 내부감사기구에 대한 연 1 회 이상 교육 제공**	○	
	⑫ 내부감사부서(내부감사업무 지원 조직)의 설치		X <sup>1)</sup>
	⑬ 내부감사기구에 회계 전문가 존재 여부	○	
	⑭ 내부감사기구가 분기별 1 회 이상 경영진 참석 없이 외부감사인과 회의 개최**	○	
	⑮ 경영 관련 중요정보에 내부감사기구가 접근할 수 있는 절차를 마련하고 있는지 여부	○	

※ 작성 기준시점은 보고서 제출일 현재

단, \* 항목은 보고서 제출일 직전 정기 주주총회 기준

\*\* 항목은 공시대상 기간 내에 해당내용을 이행하였는지 여부를 판단

※ ③ 기재시 유의사항 : 한국상장회사협의회 「주총분산 자율준수프로그램」참여를 통한 주주총회 분산개최가 인정되는 경우 집중일 이외 개최에 해당

1) 당사의 내부감사부서(내부감사업무 지원 조직)은 감사위원회에 직접 보고하는 독립성이 확보된 체계를 갖추고 있으나, 조직 구조상 대표이사 산하에 있으므로 인사권 및 예산권 등이 감사위원회에 있지 않은 바, 본 핵심지표 가이드라인에서 의미하는 완전한 독립성 조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것으로 판단하여 X로 표기하였습니다.